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본 교재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상호협력평가 신청하시기 바라며,
누락 또는 허위 작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불이익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3년간 평가대상 제외,
허위신청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한 P.Q심사 우대 중지 등

■ 2024년 상호협력평가 일정

202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상 호 협 력 평 가	
3	4	5	6	7	8	9
신 청 기 간 (3.1~3.1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사 실 확 인 서 류		
24						
31	25	26	27	28	29	30
제 출 기 간 (3.22~4.2예정)						

2024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4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중 간 평 가 결 과	
9	10	11	12	13	14	15
확 인 기 간 (6.7~6.13예정)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 증명발급 : 7.1일부터	

2024년 상호협력평가 신청 순서도

1 시스템 접속 자료입력·확인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중 '신청서작성' 클릭 →
시스템 비용 결제 → 신청내용 입력

2 평가 신청 준비

신청내용별 사실확인서류 준비

3 온라인자료전송 (제출·신청)

**2024년3월15일까지 신고시스템에서 신청내용확정 및 온라인 자료
전송·제출**

※ 온라인 자료전송(제출) 후, 전산출력물 등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4 신청서류 접수결과 확인

신청서류가 온라인 자료전송·제출(접수)되었는지 확인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진행 및 접수현황 메뉴에서 접수증 출력 가능

5 사실확인서류 제출대상 확인 및 온라인제출

(시스템상 전산파일
업로드·제출)

업체별 사실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인 및 제출(3.22.~4.2.예정)

▶(확인방법)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사실확인서류 조회

▶(제출방법) 서류원본을 스캔하여 전산파일(pdf) 형태로 업로드

※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전산파일 업로드 위치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사실확인서류 업로드'에서 평가항목별로 서류 업로드

6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접수

신청내용에 대한 **중간평가결과 확인(6.7.~6.13 예정)**

▶(확인방법)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중간평가표 조회

7 최종 평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평가결과 발표 (6월말, 국토부 홈페이지)

※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8 확인서 발급

'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증명발급 개시 (7.1 예정)

※ 당년도 적용시작일('24.7.1) ~ 차년도 적용시작전일('25.6.30)

■ 상호협력평가 신청 주의사항

①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제출(온라인자료전송) 기한 이후 수정불가

- ▶ 상호협력평가 신청은 3월15일까지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에서 온라인 자료전송·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추가 또는 정정은 불가능
- ▶ 3월15일까지 확정·전송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확인 후 제출 요망

② 허위서류 작성, 제출시 제재 조치

- ▶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는 3년간 상호협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는 PQ 등 입·낙찰시 우대 중지, 시공능력평가액 재산정(시평 허위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부정당제재 요청 등 조치) 등 제재 조치

③ 차년도 평가 대상공사 성실신고 요망

- ▶ 이월되는 공사(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등)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지 반영되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평가지 수정·변경 불가

④ 사실확인서류 제출방법 확인 및 기한내 제출 요망

- ▶ 사실확인서류는 제출기한(3.22~4.2.예정) 내에 서류원본을 스캔하여 전산파일(pdf) 형태로 신고시스템에서 업로드하여 제출

⑤ 요청한 사실확인서류에 대한 제출 필수

-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검토과정 중 협회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류 등 입증서류 미보완시 해당 평가항목 모두 불인정 (0점 처리)

⑥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은 6월 중순(6.7~6.13.예정)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사실확인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

⑦ 신청서·평가표 다운로드

-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및 중간평가결과 평가표는 해당시스템 이용기간에만 인쇄 및 다운로드(pdf) 가능

⑧ 업체 담당자 변경시 조치

- ▶ 카카오톡 및 SMS를 통한 안내(사실확인서류 제출요청, 제출서류 미비·보완요청, 중간평가결과 안내 등)는 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담당자 연락처로 통보
- ▶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변경시(휴대폰, 이메일 포함), '신고시스템' → '상호협력평가 신고' → '업체정보' 에서 수정 가능
- ※ 담당자 부재, 퇴직, 연락처 누락(미변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 변경시 수정 필수

상호협력평가 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TIP

- 상호협력 평가 신청 시스템 접속사이트 URL주소 변경
- (접속주소) <https://cons.cak.or.kr>

※ 동 사이트에서 상호협력평가 관련 모든 업무(시스템 결제, 신청내용 입력, 사실확인서류·중간평가결과 확인 등)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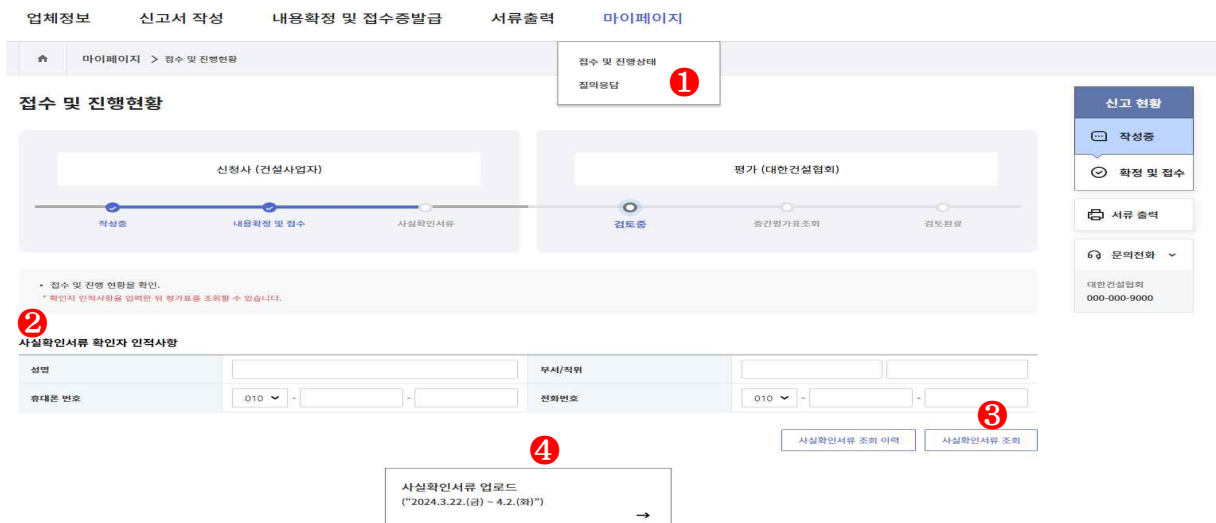
시스템 이용방법

- ▶ ① <https://cons.cak.or.kr> 접속 → ② 사업자번호 입력 후 로그인 → ③ '상호협력평가 신청' 클릭 → 상호협력 평가신청 결제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자료전송 등 이용



사실확인서류 확인·업로드(제출)방법

- ▶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3.22~4.2.예정)에 '마이페이지' → ① '접수 및 진행상태' 클릭 → ②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 ③ 사실확인서류 조회 → ④ 사실확인서류 업로드 클릭



보완서류 제출 방법

- ▶ 사실확인서류 제출 이후,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상태’ 클릭 → ❶하단의 검토 진행현황 확인 → ❷‘엑셀’ 클릭하여 보완요청내역 확인 → ❸‘업로드’ 클릭하여 보완서류 제출

검토 진행현황 ❶

구분	최종보완 요청일	최종보완 완료일	보완 요청건수	보완요청 또는 검토내역	보완서류 업로드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상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업종별 협력업자와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협력업자 재무 지원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협력업자 교육 지원 현황	2024-05-11 21:00:04	2024-05-12 12:50:14	2	2 엑셀	3 업로드
협력업자 기술 지원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상생협력제 운영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검토 진행중입니다.	

※ 상세내용은 17. (상호협력평가 신청이후) 사실확인서류 제출방법(p.92)참고

중간평가결과 조회 방법

- ▶ 중간평가결과 확인기간(6.7~6.13예정) ‘마이페이지’ 클릭 → ‘접수 및 진행상태’ 클릭 → ❶하단의 ‘평가표 조회’ 클릭

접수 및 진행상태



- 접수 및 진행 현황을 확인.
- * 확인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평가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 확인자 인적사항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번호	☎ 선택 -	전화번호	☎ 선택 -	

1
평가표 조회 이력
평가표 조회

CONTENTS

I.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3
II. 상호협력평가 신청방법	9
1. 제출서류 목록, 제출처, 문의처 등	
III. 항목별 평가기준 및 시스템 입력방법	15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17
2. 협력업자 관리대장 작성	19
3. 공동도급 실적 평가	24
4.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평가	30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평가	38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2) 하도급 낙찰률	
(3)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4) 전자하도급계약	
6. 협력업자 재무·교육지원 평가	50
(1) 협력업자 재무지원	
(2) 협력업자 교육지원	
7.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61
8. 상생협업체 운영실적 평가	65
9.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70
10. 제재처분 감점	72
11.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평가	75
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77
13.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83
14.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실적 평가	86
15.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87
16. 신청내용 확인 및 온라인 자료전송(제출)	90
17. (상호협력평가 신청이후) 사실확인서류 제출방법	92
18. 신청서류(참고용) 및 별지서식 서류 출력방법	93
IV. 부 록	95
<참고1> 국토부고시(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97
<참고2> 평가관련 제출 서식	124
<참고3> 종합 및 전문건설업, 환경관련 공사업 종류	132

I .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요

1 평가 개요

목 적

- ▶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법적근거

-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1호 (2021.9.30)

평가기관

-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일부 항목 공동 확인)

평가대상

- ▶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 2023년도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 종합건설업종으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등 협력관계를 평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종합건설사업자 자격으로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및 평가기간 : 2024년 3월 ~ 6월

평가 세부일정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사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자료전송) - 신고시스템에서 신청자료 입력 후 온라인전송(제출)	'24.3.1. ~ 3.15.
↓		
신청사	■ 사실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인 및 서류제출 - 확인방법 :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사실확인서류 조회 - 제출방법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하단 '사실확인서류 업로드'에서 입증서류(pdf) 업로드	'24.3.22.~4.2. (예정)
↓		
협회 & 신청사	■ 신청내용 검토 및 평가 -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검토	'24.4.3.~6.6. (예정)
↓		
신청사	■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결과 확인후 미비서류 보완	'24.6.7.~6.13. (예정)
↓		
국토교통부	■ 최종 평가결과 발표 (국토부 홈페이지)	'24.6월말
↓		
협회 등	■ 평가결과 확인서 증명발급 개시 - 평가결과 우대사항 등 적용	'24년 적용시작일 ~ '25년 적용시작 전일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52점	4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37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27점	27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8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5점	
4. 신인도	18점	2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3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감점, 없으면 기본점수)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10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점)	(5점)	
5. 가 점	+19점	+19점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5점)	(+5점)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등 협력실적	(+3점)	(+3점)	해당기업 없음
라.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8점)	(+8점)	
총 계	100점	100점	

3 평가결과 우대사항

우대내용

- ▶ 공공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건설법 시행규칙 [별표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 ▶ 건설법 상 벌점 감경 (※건설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 세부 우대내용 】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감 경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건설법상 벌점
	PQ·적격	종합심사	PQ·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60	2.0	0.5	6%	-0.5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50				-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40	1.5	0.4	5%	-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30	1.0	0.3	4%	-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20	0.5	0.2	3%	-

※ 60점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우대기간

- ▶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2024년 평가결과('24.6월말 예정) 적용 시작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까지
-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2024년 시공능력 평가시('24.7월말 예정)부터 다음년도 평가 전일까지
- ▶ 건설법 상 벌점 감경
 - 2024년 평가결과 적용시작일부터 3년간

II. 상호협력평가 신청 방법

1 평가신청 흐름도

업 무	세부내용
1. “신고시스템” 로그인	■ https://cons.cak.or.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 신고’ 클릭 ■ 시스템 비용 결제
2.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입력 · 확인	■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신청내용 입력
3. 신청내용 온라인 전송(제출) ※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24년3월15일까지 신청내용 확정 및 온라인 자료전송·접수 ■ 신청기한 중 최종 온라인 전송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4. 사실확인서류 온라인 제출 ※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지정된 사실확인서류 제출 대상공사 확인 ■ 사실확인서류를 전산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24년3월22일~4월2일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및 크롬”으로 접속 요망 (인터넷익스플로어(IE)로 접속 불가)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3. 1.(금) ~ 3. 15.(금)

 신청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에서 신청내용 입력 후,
내용확정 및 온라인 자료전송(제출)

※ 신청기간 내 내용 확정 및 온라인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 평가신청 완료로 처리
(자료전송 이후, 상호협력평가신청 접수증 출력 가능)

3 제출서류 목록

1 신청서류 (* 별도 준비서류 없음, 신청시스템에서 입력후 자료전송)

-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에서 평가항목별 신청내용 입력 후 온라인 자료전송하면 됨
 - 법정신청기한인 3월 15일까지 최종 온라인 자료전송(제출)된 내용으로 평가되며, 입력이 누락된 평가항목은 '0'점 처리됨
 - ※ 3월 15일 이후 자료전송(제출) 및 수정·정정 불가

2 사실확인서류 (* 평가항목별로 서류를 분류하여 전자파일(pdf)로 업로드)

- ▶ 협회가 업체별로 대상공사를 지정하여 사실확인서류를 제출 통보한 대상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 후, 평가항목별로 사실확인서류를 제출
 - 제출 대상공사 확인 및 제출기한 : 3월 22일 ~ 4월 2일(예정)
- ① 제출 대상공사 및 제출서류 확인방법 :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하단의 '사실확인서류 조회' 버튼 클릭
-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방법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 '사실확인서류 업로드' 버튼 클릭 →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자파일(pdf 등) 업로드
 - ※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사실확인서류 제출목록 >

사실확인서류 목록	비 고
①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p.25 참고
② 2023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p.33 참고
③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찰률 관련 서류	p.43 참고
④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관련 서류	p.44 참고
⑤ 전자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p.44 참고
⑥ 재무지원 관련 서류	p.56 참고
⑦ 교육지원 관련 서류	p.56 참고
⑧ 기술지원 관련 서류	p.63 참고
⑨ 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상생협의체 운영 관련 서류	p.67 참고
⑩ 상호협력 관련 표창 서류	p.70 참고
⑪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자재장비대 지급 관련 서류	p.79 참고
⑫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관련 서류	p.86 참고
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관련 서류	p.88 참고

4 문 의 처

① 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시도회	전화번호	시도회	전화번호
서울시회	(02) 3218-9121~4	강원도회	(033) 254-2912
부산시회	(051) 906-9000	충북도회	(043) 253-7496
대구시회	(053) 751-6601	충남·세종시회	(041) 633-3000
인천시회	(032) 439-7272	전북도회	(063) 288-3881~2
광주시회	(062) 232-5601	전남도회	(062) 511-4001~5
대전시회	(042) 486-0881~4	경북도회	(053) 755-5007
울산시회	(052) 244-6500	경남도회	(055) 288-7001
경기도회	(031) 253-4551~3	제주도회	(064) 746-2503

②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담당자	전화번호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 3485 - 8244, 8312, 8315, 8326, 8327, 8332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발급, 갱신, 오류 등)

- 대한건설협회 시스템(홈페이지,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하도급직불이행, 인터넷 증명발급 등) 이용시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협회는 공동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제휴를 통하여 정상가격 110,000원인 공동인증서를 66,000원에 할인하여 발급하고 있음
- 할인된 공동인증서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하단의 공동인증서 할인 배너 클릭

공동인증서 문의처	전화번호
한국무역정보통신	1688-2370

※ 공동인증서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직접 문의

Ⅲ. 항목별 평가기준 및 시스템 입력방법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가. 개 요

▶ 상호협력평가 신청사 및 작성담당자(2인)의 기본정보 입력

- 사실확인서류 등 보완 요청사항이나 평가결과 등을 신고시스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통보(유선, SMS 등) 할 예정이므로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담당자 변경시 신고시스템(<https://cons.cak.co.kr>) → 상호협력평가 신고 →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메뉴에서 담당자정보를 수정하거나 협회로 유선 통보 요망

▶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신고(매입) 자료의 전산연계를 위해 “홈택스 자료 온라인 전송” 클릭

나. 시스템 입력요령

0.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 상호협력평가 신청사 및 작성담당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홈택스자료의 협회 전송 여부를 확인.
* 가입된 연혁자료 상호협력평가 관련 보안, 일일 등 연혁(SMS, 카카오톡, 메일)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업체개요 ①

상호	(주식회사) 대한건설	대표자	성준향	기업규모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616-88-12314	법인등록번호	222222-2222222	전화번호	02-3485-9999
본사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21 - 0				
건설업등록번호	도건	도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999999	111111		

작성담당자 목록 ②

소속부서명	부서명	직위 및 성명	테스트	전화번호	02 - 1234 - 5678
휴대폰 번호	010 - 1234 - 5678	이메일	sangho@sangho.com		
소속부서명		직위 및 성명	예) 대리 홍길동	전화번호	:: 선택 - -
휴대폰 번호	:: 선택 - -	이메일	example@gmail.com		

업체 정보 갱신 저장 삭제

홈택스 온라인전송 ③

2023년 02월 01일 오픈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송하세요.



- 부가세신고(매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왼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용절차 안내 (프로그램 관련 문의 : 02-2122-2536) 나이스 D&B
- ※ 자료전송클릭 → 동의 → 공인인증서 인증 → 자료전송 → 전송내역 조회

개인(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약관에 동의 하십니까? ☒

① 업체개요

▶ 본사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입력

- 만약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등록번호 등 업체 정보가 화면에 보여진 내용과 상이한 경우, 협회 각 시·도회(비회원사 포함)에 문의 후, '업체정보 갱신' 클릭하여 확인

② 작성담당자 목록

▶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부서, 직위 및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상세 기재 요망

- 이후 상호협력평가 관련 **안내사항**(사실확인서류 제출요청, 제출서류 미비·보완요청, 중간평가 결과 안내 등) **통보시 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담당자 연락처로 통보**

※ 담당자 부재, 퇴직, 연락처 누락(미변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③ 홈택스 자료 온라인전송 & 개인정보정책 동의

▶ 홈택스 자료 온라인전송 버튼 클릭(동의)시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 (매입)를 협회로 온라인 전송 가능

- 자료 온라인 전송시 하도급 기성실적 평가 사실확인서류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필요

※ 신청사의 자료 제공 동의 및 공동인증서 확인을 통해 직접 자료 전송

▶ '업체개요', '작성담당자' 미입력시 또는 '개인보호정책 약관' 미동의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2 협력업자 관리대장 작성

가. 개 요

- ▶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2023년) 협력업자의 정보를 입력

나. 협력업자 인정 기준

- ▶ 건설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만 협력업자로서 인정

* 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시공업,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비건설사업자*이므로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종합 또는 전문, 환경 관련 공사업의 종류 <부록. 참고3> 참조

- 단, 신청사가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종합건설사업자도 협력업자로 등록 가능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간,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간은 상호협력평가지 협력업자로 인정 불가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 기준' 1등급(4,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 근거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 신청사 규모별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신 청 사	협력업자 인정(O)	협력업자 불인정(X)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건설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건설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자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단, 협력업자가 신청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이거나 환경관련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인 경우, 해당업체의 건설업등록증·환경관련공사업등록증 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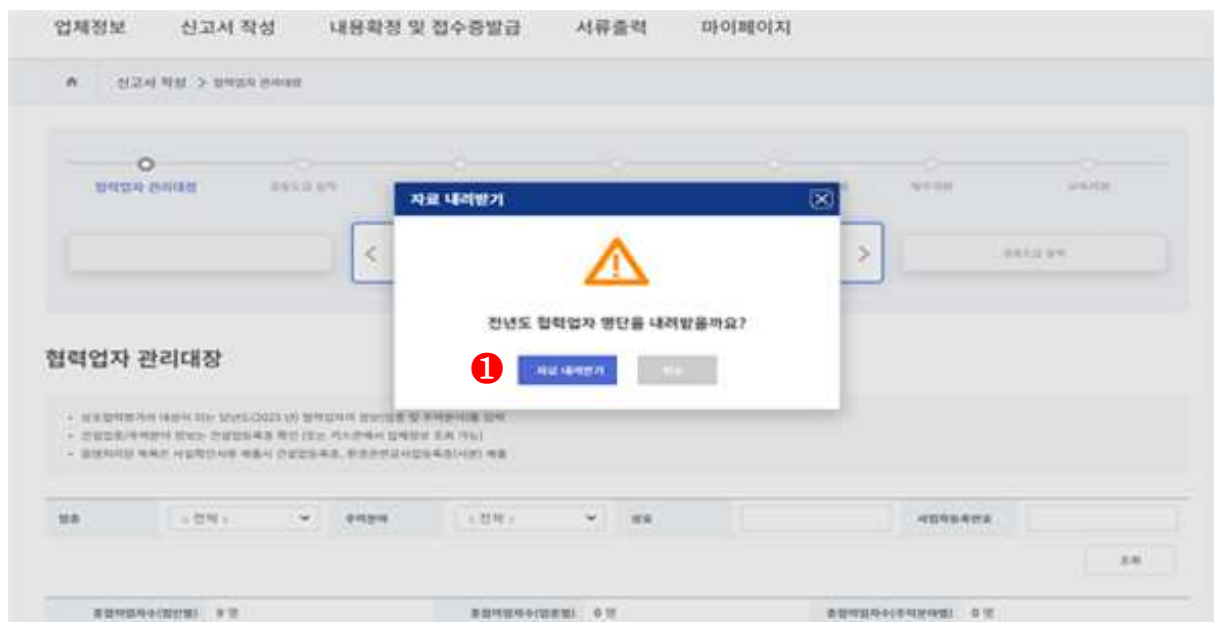
라. 시스템 입력요령

1.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입력 TIP

메뉴 최초 접속시, 전년도(2022년도분) 상호협력평가시 협력업자로 인정받은 명단을 다운로드하고, 동 명단에 삭제·수정·추가 입력하여 '23년도 협력업자 명단을 작성

△주의사항 : 동 메뉴에서 협력업자를 삭제하면 하도급실적 등 후단메뉴에서 해당 협력업자에 대해 입력한 값들이 자동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삭제할 것



협력업자 관리대장

-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2023년) 협력업자의 정보(업종 및 주력분야)를 입력
- 건설업종/주력분야 정보는 건설업등록증 확인 (또는 키스콘에서 업제정보 조회 가능)
- 운영차리된 목록은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건설업등록증, 환경관련공사업등록증(사본) 제출

업종

:: 전체 ::

주력분야

:: 전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총협력업자수(법인별) 220명

총협력업자수(업종별) 248명

총협력업자수(주력분야별) 249명

10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등록일변경

엑셀업로드

☐	순번	업종	주력분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	전년도 협력업자
☐	1	토건		(주)두산종합건설	312-81-56819	최원규	120196	2023-01-01	Y
☐	2	토건		(유)광산토건	418-81-00307	한순도	140005	2023-01-01	Y
☐	3	토건		(주)대흥종합건설	303-81-10876	김갑영	2853	2023-01-01	Y
☐	4	조경		티에이치산업개발(주)	566-87-00404	황선영	2694	2023-01-01	Y

협력업자 자료현황

협력업자 자료현황

③ 업종*	:: 선택 ::	④ 주력분야*	:: 선택 ::
상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예) 02-999-9999
주소*			
⑤ 협력업자* 당년도 등록일자	연도별로 등록·관리되므로 당년도(2023년)에 등록한 일자 입력		
⑥ 전년도협력업자여부	N		

저장 닫기

① 자료내려받기

- ▶ ‘2.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최초 접속시 또는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 전년도에 인정받은 협력업자 관리대장 ‘자료내려받기’ 가능
- 내려받은 자료에 반드시 ‘당년도(2023년)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입력하고, 편집(수정/추가/삭제) 한 후 저장
- ※ ‘자료내려받기’는 입력된 자료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전년도 자료를 다시 내려받고자 하는 경우 입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내려받기 창이 보임

② 추 가

-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자를 추가 등록
- ‘상호’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명을 검색 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가 자동 입력됨
- 만일 검색되지 않는 협력업자라면 직접입력 후 상호협력평가 사실확인서류 제출시(‘24.3.22.~4.2.)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환경관련공사업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비건설사업자로 간주하여 협력업자 및 하도급실적 등이 인정되지 않음
- ※ 신청 시스템상에서 검색되지 않는 업체는 음영처리 됨

③ 업 종

- ▶ 협력업자는 업체가 아닌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 단위로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종(이하 ‘대업종’)을 기준으로 선택·입력하여야 함
- ※ 동일 법인이 여러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협력업자 등록일 현재 보유업종으로 입력)

④ 주력분야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은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를 선택·입력하여야 함
 - 동일 대업종에 여러 주력분야를 보유한 경우 각각의 주력분야를 모두 입력
- ※ 종합건설업은 주력분야 입력 불필요(비활성)

⑤ 협력업자 당년도 등록일자

- ▶ 당년도(2023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일자를 캘린더에서 선택하여 입력
 - 협력업자는 연도별로 등록·관리되므로 전년도(2022년) 협력업자이더라도 당년도(2023년) 등록일자를 입력하여야 함
 - 우측 상단의 '등록일 변경'으로 등록일자 일괄 입력 가능

⑥ 전년도(2022년) 협력업자 여부 (전산 자동입력)

- ▶ 동일 법인이라도 전년도(2022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주력분야와 당년도(2023년)에 등록한 업종·주력분야가 다를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전년도 협력업자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 입력되며,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는 수정할 수 없음

⑦ 엑셀 업로드

- ▶ 각각의 평가항목별 입력자료가 많을 경우 '엑셀 업로드' 클릭 후 양식에 맞춰 자료를 일괄 입력후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
 - 평가항목별 엑셀파일의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반드시 동일 양식으로 작성하고, 필수 입력항목들은 모두 입력되어야 저장 및 업로드 가능
 - 엑셀파일에 입력·저장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증, 오류가 있으면 업로드되지 않으므로 해당 오류내용을 검증·확인하여 수정후 업로드

3 공동도급 실적 평가

가. 개요

- ▶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자와 함께 시공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 (배점 : 대기업 10점)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영기준' 1등급(4,200억원 이상, 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개정 '23.7.6. 시행 '23.7.10)에 해당하는 자

나. 세부 평가기준

■ 아래 '가', '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frac{\text{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text{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60%이상	5
		50%이상~60%미만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30%미만	0
나. 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frac{\text{④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text{③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총기성액}}$	40%이상	5
		30%이상~40%미만	4
		20%이상~30%미만	3
		15%이상~20%미만	2
		15%미만	0

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신청사의 국내 공동도급 현장수로서 **건설 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24.5월말 확정)
- 신청사가 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에 따라 **대기업으로 신규 편입된** 경우는 새로운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이후('23.8.1.~) 체결된 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

- ▶ ①에 따라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에 포함된 현장 중 협력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기성실적이 발생한 건수
- ▶ '전년도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 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공동도급 실적 건수를 인정
- ▶ 공동도급 구성사인 협력업자가 공동도급 계약체결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도급 실적도 인정 가능

③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총기성액

- ▶ 고시 개정·시행 이후('20.1.1.~) 체결된 공동도급공사 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 협력업자의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해당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및 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구성사 기성액 합계)을 합산
 - 신청사가 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에 따라 대기업으로 신규 편입된 경우는 새로운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이후('23.8.1.~) 체결된 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④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 ③에 따른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 ▶ 공동도급 구성사인 협력업자가 공동도급 계약체결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도급 실적도 인정 가능

⑤ 평가기준

- ▶ 신청사의 당년도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다. 사실확인서류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협회 실적신고 및 업체별 소재지 등록자료, KISCON 자료 활용)
 - ※ 단, 전산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 업체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참고

협력업자의 공동도급실적 평가기준 (예시)

< 당년도 신청사 공동도급 기성실적 현황 >

공 사 명 (계약일자)	공사 지역	신청사 당년도 기성액	공동도급구성사 (모두 중소기업)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인정여부	지역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인정여부	
			상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계약시 본 사 소재지			당년도 기성액
				'22년	'23년				
甲 공사 (계약일자 : '19.3.10.)	경기도	30억	A사	'22. 1.1.	'23. 1.1.	경기도	8억	인정	불 인정 (고시 개정·시행 ('20.1.1.) 이전 계약공사)
乙 공사 (계약일자 : '22. 3. 1.)	인천시	70억	B사	'22. 1.1.	'23. 1.1.	서울시	15억	인정	불 인정 (공사지역 ≠ 협력업자 소재지)
			C사	'22. 1.1.	'23. 3.2.	인천시	20억	인정	인정
			D사	x	'23. 3.2.	경기도	5억	불인정 (전년도 협력업자 미등록)	불 인정 (전년도 협력업자 미등록)
丙 공사 (계약일자 : '23. 10. 1.)	경기도	40억	E사	x	'23. 9.1.	경기도	10억	인정	인정
丁 공사 (계약일자 : '22. 5. 1.)	제주도	50억	F사	x	'23. 9.1.	제주도	50억	불인정 (전년도 협력업자 미등록)	불 인정 (전년도 협력업자 미등록)

➡ [계산방법]

-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 4건 (甲공사, 乙공사, 丙공사, 丁공사)
-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 3건 (甲공사, 乙공사, 丙공사)
- ③ 지역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공사의 당년도 총기성액 : 160억
(乙공사 110억(신청사70억+구성사40억), 丙공사 50억(신청사40억+구성사10억))
- ④ 지역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30억(乙공사 C사 20억 + 丙공사 E사 10억)

▶ 평가기준에 따른 비율산정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3건^② ÷ 4건^① = 75% ⇒ **5점**
-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 30억^④ ÷ 160억^③ = 18.75% ⇒ **2점**

라. 시스템 입력요령 (※신청사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페이지 자동 실행)

2.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입력 TIP

메뉴 최초 접속시, 협회에 신고한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 중 공동도급으로 신고한 실적을 다운로드하고, 동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공동도급한 내용으로 신청사 및 협력업자의 기성액 등을 추가·수정 입력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interfac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containing '업체정보', '신고서 작성', '내용확정 및 접수증발급', '서류출력', and '마이페이지'.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s a breadcrumb trail: '홈 > 신고서 작성 > 실적신고 관리대장'.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협력업체 관리대장'. A modal window titled '자료 내려받기' (Download Data) is displayed in the center, featuring a warning icon and the text: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 중 공동도급으로 신고한 공사 목록다운' (Download the list of construction projects reported as joint bidding from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report content).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1' is placed over the '자료 내려받기' button in the modal.

공동도급 실적

- 공동도급공사에 함께 참여한 신청사 및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 정보 입력
- * '공동도급한 건수'는 실적신고서 제출·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업종	:: 전체 ::	주력분야	:: 전체 ::	지역공동도급	:: 전체 ::
공사명		상호		계약일자	~
조회					

공동도급한 건수	3 건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3 건	지역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액	322 백만원	지역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공동도급 총공사기성액	700 백만원
				②	③		
10				추가	구성사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순번	신고번호	공사명				중복여부	당년도 협력업자 전년도 협력업자	지역 공동도급	업종 주력분야	상호	당년도기성액	예외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공사 기성액	신청사 기성액							
☐	1	2023-0006	SSSSst				N	Y	N	건축	(주)수영로지콘	23	N
			2023-01	2023-10	500	200							
☐	2	2023-0006	SSSSst				N	N	Y	기계가스설비 가스시공(1종)	대하건설(주)	33	N
			2023-01	2023-10	500	200							

신청사의 원도급신고내역

공사명		조회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사지역		조회
당년도 기성액	A.총기성액 (구성사총계) 총기성액(A) = 신청사기성액(B) + 협력업자 + 구성사	
	B.신청사 기성액	
공동도급형태	선택	신청사지분율 %
발주자명		
비고		
종목여부	N	

※ 신고번호는 공사실적서 신고번호(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 신청사기성액은 순수한 신청사(자사)의 기성액을 입력.

(실적신고시 주택약자방식에서 추가 인정한 구성사의 실적은 제외하고 자사분만 입력)

공동도급구성사(협력업체)

당년도협력업자여부	Y
업종	전체 주력분야
상호	조회
공동도급사 분사소재지	조회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협력업자여부	N
협력업체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예외	N

※ '지역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공동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가 평가대상에 포함됨
※ 공동도급사 분사소재지는 계약당시 기준으로 입력

1 자료내려받기

- ▶ 메뉴최초 접속시 또는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 중 공동도급으로 신고한 공사목록 다운로드 가능

- 내려받은 자료에 실제 공동도급 내용에 맞게 입력한 후 저장

※ '자료내려받기'는 입력된 자료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실적신고 자료를 다시 내려받고자 하는 경우 입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내려받기 창이 보임

2 추 가

- ▶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발주자명, 공동도급 전체 등에 대해 '23년도 당년도 기성액(전체 및 신청사분 등) 입력

3 구성사 추가

- ▶ 기입력한 해당 공동도급 공사건에 대해 신청사를 제외한 공동도급 구성사 정보만 추가 입력

- 구성사가 협력업자인 경우, '상호'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상호를 클릭하여 '상호', '업종', '주력분야',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등을 자동 입력 가능

④ 총공사기성액

- ▶ 공동도급공사의 당년도 총기성액(공동도급 구성사들의 당년도 기성액 합계) 입력

⑤ 신청사(자사) 기성액

- ▶ 해당 공사 기성액 중 신청사 지분에 해당하는 당년도 기성액을 입력
- ▶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24.5월말)받은 결과에 따라 당년도 기성액이 조정될 수 있음

⑥ 비 고

- ▶ 신청사·구성사의 공동도급지분율, 공동도급유형(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이 혼재된 경우 상세내용) 등을 입력

⑦ 중복여부

- ▶ 하나의 원도급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공종 등 각각 다른 건으로 실적신고한 경우 별건이 아닌 **1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공사번호가 후순위 공사 건의 중복여부를 'Y'로 체크

《예 시》

A현장의 건축공사(공사번호 2023-0001)와 A현장의 토목공사(공사번호 2023-0002)를 별건으로 신고한 경우 '중복여부'에 'Y'로 체크하면 공동도급 건수에 1건으로 인정됨.

⇒ (입력방법) 건축공사(2023-0001)는 중복여부에 'N'으로 체크하고,
토목공사(2023-0002)는 " 'Y'로 체크

⑧ 공동도급사 본사소재지

- ▶ 공동도급 계약 당시, 공동도급구성사(협력사) 본사의 지역(시·도)과 세부주소를 입력

⑨ 예 외

- ▶ 공동도급 구성사가 현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이었고,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되었던 경우라면 해당 공동수급자의 예외란에 'Y'로 체크

4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평가

☞ 하도급계약액이 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하도급공사에 대해 신고·평가 (백만원 단위로 입력, 단위미만은 절사)

가. 개요

- ▶ 신청사의 기성실적 중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의 기성실적의 비율을 평가 (배점 : 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

나. 세부 평가기준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액 ① 신청사 총기성액	45%이상	20	40%이상	25
	35%이상~45%미만	15	30%이상~40%미만	20
	25%이상~35%미만	10	20%이상~30%미만	15
	15%이상~25%미만	5	10%이상~20%미만	10
	15%미만	0	10%미만	0

① 신청사 총기성액

- ▶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통해 인정된 '국내 종합공사 기성액 합계'로 산정 ('24.5월말 확정)

- **중소기업인 신청사** 종합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 및 하도급실적 신고 불가
· 따라서, '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¹⁾아래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액을 포함하여 자사 종합공사 기성액으로 신고·인정된 경우, '①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서 하도급 준 해당 기성액을 ²⁾제외

신청사 총기성액 제외기준

《 ¹⁾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실적 제외 대상공사 》

- 건산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1건 원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등)이면서, 원도급공사가 다음 날짜 이후의 공사일 것
 - 공공공사 : '21.1.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
 - 민간공사 : '22.1.1일 이후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 ²⁾입증방법 》

-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24.3.22~4.2) 중 '다.사실확인서류'에 기재된 입증서류 제출

- **대기업인 신청사** 종합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 및 하도급실적 신고 가능
· 단, '종합건설사업자(협력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액'이 '①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①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 해당금액을 합산

- ▶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경우, 총기성액에서 제외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액

- ▶ **당년도(2023년) 협력업자 등록 후, 해당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액을 합산**
 - 하도급 기성액에 대한 **당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 **‘이전년도(∼2022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2023년) 협력업자 등록일 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하도급 기성액을 인정**
 - 전년도 협력업자 인정 기준 : 전년도(2022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주력분야’와 당년도(2023년)에 등록한 ‘주력분야가 동일한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
 - ※ 신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당년도 공사실적이 없더라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야 차년도 평가시 하도급기성으로 인정 가능

《 협력업자 하도급실적 평가기준 (예시) 》

하도급 공사 (계약일자)	협력 업자 업종	22년도 하도급실적 평가내용		23년도 하도급실적 신고내용				하도급실적 인정 여부
		주력 분야(a)	당년도 협력업자	주력 분야(b)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	당년도 협력업자	전년도 협력업자	
甲 공사 (23.9.1)	철콘	미신고	-	철콘	23.1.1.	인정	-	인정
乙 공사 (23.9.1)	철콘	미신고	-	철콘	23.9.2.	인정	불인정	불인정 (협력업자 등록일 이전 계약체결→전년도 협력업자 미신고)
丙 공사 (22.3.1)	지반 포장	토공	인정	토공	23.2.1.	인정	인정	인정
丁 공사 (20.3.1)	지반 포장	포장	인정	토공	23.1.1.	인정	불인정	불인정 (a≠b→전년도 협력업자불인정)

※ 협력업자별 전년도 주력분야과 당년도 주력분야를 비교

- ▶ **당년도에 원도급 기성액이 발생한 건설공사에 한해 하도급 기성액 인정**
 - 당년도 원도급 기성액의 미발생(발주자로부터 선급금만 지급받은 경우 포함)으로 ‘①신청사 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기성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정 불가

- 다만, 차년도에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기성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년도에 불인정되었던 하도급 실적을 **차년도 하도급 실적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차년도에 원도급 기성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당년도 중 원도급공사 준공 등)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차년도 1분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까지 당년도 하도급 기성액으로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신청사의 지분을 적용하여 해당 하도급 기성액 부분만 인정**

▶ **당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기성액이 미발생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다른 평가항목(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성/하도급낙찰률/하도급대금 현금성조기지급/전자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세부내용에 대해 입력하되, 하도급 기성액이 없는 경우 당년도 하도급 기성액을 '0'으로 입력

▶ **2023년도에 2건 이상의 원도급공사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고 하도급계약은 총괄 계약한 경우 하도급 기성액을 한쪽 차수로 합쳐서 신고 가능**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액도 하도급 기성액으로 인정**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기성액도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성액도 인정**

▶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경우, 그 전문공사 기성액 및 협력업자 하도급기성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사실확인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에서 ‘홈택스 자료 온라인전송’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단,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한 ‘2023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협력업자에 대한 홈택스 신고자료와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에 입력된 기성액이 상이한 경우 2)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 동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3) 신청사의 대표업종이 건설이 아니거나, 현장·지사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홈택스자료는 법인별 대표업종의 사업자번호로 신고된 내용만 제공되므로 건설이 대표업종이 아니거나, 본사 사업자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 홈택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음 4) 자체기장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다운로드된 엑셀자료’를 함께 제출 ※ [작성방법] 연간기준('23.1.1~12.31)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도급사 제출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대표사, 구성사 모두 제출) ㉠ 해당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공동도급구성사·지분율이 표기된 도급계약서 ㉡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협력업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협력업자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구성사가 대표사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일 ※ 해당내용에 밀줄 표시

23년도 실적신고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 **대상업체** : 신청사가 중소기업으로서 '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자사 기성액에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기성액을 포함하여 신고, 인정된 업체
- 단, 해당공사가 공공공사의 경우 '21.1.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 민간공사의 경우 '22.1.1일 이후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체결)된 공사로서 1건 원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 **제출서류** :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대표사, 구성사 모두 제출)
- ㉠ 신청사가 실적신고시 제출('24.2월)한 “2023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 날인본)
 - ㉡ 종합건설사업자인 하도급자의 “2023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또는 원사업자) 및 하도급자 날인본)
 - ㉢ 대상공사 입증서류(공공공사는 입찰공고문, 민간공사는 원도급계약서)
 - ㉣ 신청사와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자 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라. 시스템 입력요령

3.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입력 TIP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국내 원도급종합공사 현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공사별로 각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기성액 등 하도급내용을 입력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2023년) 하도급 기성실적을 입력
- * 신고대상 : 하도급계약액이 1백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기성액 단위 : 백만원(단위미만 절사)
- * 운영처리된 목록은 하도급 기성액이 0인 공사

업종	:: 전체 ::	주력분야	:: 전체 ::	전년도 협력업자	:: 전체 ::
공사명		상호		하도급 계약일자	
조회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2 건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건수 (신규하도급계약)	2 건	전체 하도급건수	134 건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 합계	2,233 백만원
------------	-----	---------------------------	-----	----------	-------	---------------	-----------

10

추가
하도급추가
수정
삭제
종료
엑셀업로드

순번	신고번호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백만원)						
		공사명				하도급 공사번호	업종 주력분야	상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기성액 (신청사분)	당년도 협력업자 전년도 협력업자	
		계약년월	준공년월	계약액 (신청사분)	기성액							
	1	2023-0001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건설공사(T/K) (제6차)									
			2023-02	2023-11	9,685	1,479						
	2	2023-0005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2차)									
			2023-03	2023-08	866	0						

원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 실적

원도급공사

3
공사명

조회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백만원

당년도
기성액백만원

4

계약유형

발주자명

비고

※신고번호는 공사실적시 신고번호(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하도급공사

5
하도급공사번호

업종

주력분야

6
상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액백만원

당년도
기성액백만원

7

협력업자

8

홈텍스 매입처별 합계금액백만원

※당년도 원도급 기성액이 0 이거나 불인정 받은 경우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하도급공사번호는 입력시(업종 및 상호) 입력하면 자동입력됨.
 ※통일 원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정보 입력시 '하도급추가' 클릭

① 하도급추가

- ▶ 기 입력된 해당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추가 입력시 사용
- ▶ 해당 원도급공사를 선택 후 하도급추가 버튼 클릭하여 협력업자 및 하도급공사 내역 입력 후 저장

② 수 정

-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 내역 입력

③ 공사명

- ▶ 당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액이 발생한 원도급공사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 기성액(신청사분)’을 자동 입력 가능

④ 계약유형 (신청사지분율)

- ▶ 공동도급공사가 아닌 경우 ‘단독’을 선택하고, 공동도급공사인 경우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방식 중 선택
 - ‘공동이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신청사의 지분율을 추가 입력해야 하며, ‘0%’ 또는 ‘100%’를 입력한 경우 저장되지 않음

⑤ 하도급공사번호

- ▶ 신고번호 구성 : ①원도급공사 신고번호 + ②일련번호*
- ②일련번호는 협력업자 상호 → 업종 순으로 번호 부여

하도급공사번호	=	①원도급공사 신고번호	+	②일련번호
2023-0001-001	=	2023-0001	+	001, 002, 003..

⑥ 상 호

- ▶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협력업자의 업종을 선택 후 '상호'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협력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력분야'가 자동 입력됨

⑦ 당년도 총기성액

- ▶ 해당 원도급공사에서 발생한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 기성액을 입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하도급 기성액을 입력하면 신청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기성액이 자동 계산되어 '당년도 기성액(신청사분)'에 입력됨
- ▶ 2023년도에 2건 이상의 원도급공사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고 하도급계약은 총괄 계약한 경우 하도급 기성액을 한쪽 차수로 합쳐서 입력 가능

⑧ 홈택스 매입처별 합계금액

- ▶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홈택스자료 온라인 전송'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자료를 전산 연계하여 해당 협력업자(사업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자동 표시됨
- ▶ 하도급공사의 '당년도 총 기성액'(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신청사분의 당년도 기성액')이 홈택스 매입처별 합계금액 이하인지 비교 확인
 - ※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액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한도로 인정

⑨ 기 타

- ▶ 하도급계약서 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
 - ※ 단, 2023년에 신규(최초)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변경계약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은 2023년 최초 계약일자로 기재, 총계약액·준공일자는 최종계약 기준으로 기재

4. 업종 / 협력업자별 하도급실적 신고현황

입력 TIP

'4.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내용을 협력업자(업종,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도급기성실적 확인 가능 (입력 불필요)

업종/협력업자별 하도급실적 신고현황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을 확인 ('사업자번호별 출력'을 클릭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내용과 대조-확인)

※ '사업자번호별 출력'의 홈텍스 매입계산서 합계 금액 자동입력을 원하는 경우

업종	:: 전체 ::	주력분야	:: 전체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공동도급한 건수				6 건	하도급기성실적 합계				2234 백만원
10							출력	사업자번호별출력	

	순번	업종	주력분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하도급실적	
								하도급건수	하도급기성액(백만원)
☐	1	건축창조.지붕	지붕조립	(유)가가건설	405-81-08604	전북부안99-16-01	Y	3	12
☐	2	조경식재시설물	조경시설	(유)강산조경	407-81-20434	전북임실2010-16-01	N	1	0
☐	3	지반조성.포장	포장	(유)가가건설	405-81-08604	전북부안99-16-01	Y	1	0
☐	4	환경_대기	환경(대기)	(유)광산토건	418-81-00307	140005	Y	1	2,222

① 사업자번호별 출력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자료를 협력업자의 사업자번호별로 하도급실적을 자동 집계하여 협력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순서대로 하도급실적이 조회, 출력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하지 않을 경우

- 출력된 '협력업자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①사업자번호별출력) 상의 순번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해당 목록 우측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협력업자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자료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에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 (예 : '대표사 발행', '일부만 발행', '전년도 선급금 발행' 등)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평가

☞ 당년도(2023년)에 신규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공사에 대해 신고·평가

가. 개 요

- ▶ 공정한 하도급거래 유도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낙찰률,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전자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을 평가 (배점 : 27점)

나. 세부 평가기준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 아래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를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②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 건수}}$	70%이상	10
		50%이상~70%미만	8
		30%이상~50%미만	6
		10%이상~30%미만	4
		10%미만	0
나. 하도급를 적정 하도급건수 합계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 합산	120건이상	10
		80건이상~120건미만	8
		50건이상~80건미만	6
		30건이상~50건미만	4
		30건미만	0

① 신규 하도급 건수

- ▶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신규 (최초)하도급계약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2023년 이전 최초계약을 체결하고 당년도(2023년)에 동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규 하도급계약이 아님 (평가 비대상)

-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

-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하도급률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하도급건수

- 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의 확인 없이 해당 건을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로 인정

※ 공공발주자는 하도급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건설법 제31조제2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11.16]

-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② 하도급 낙찰률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① 도급계약액 중 협력업자의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90%이상	5
	86%이상~90%미만	4
	82%이상~86%미만	3
	82%미만	0

① 도급금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하도급부분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계약액을 합산하여 산정
- ▶ 당년도 하도급 기성액이 ‘0’인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건도 포함

③ 평가기준

- ▶ 산정방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 낙찰률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산출된 하도급낙찰률이 82% 미만인 경우,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항목 평가결과가 만점(‘가.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이 70% 이상이거나, ‘나.적정 하도급건수’가 120건 이상인 경우)이면 기본점수 2점 부여
- ▶ 협력업자 하도급실적에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으로 신고된 모든 건에 대해 세부 내용(분자·분모값)을 입력하여야 평가 및 점수 부여됨
 - 신고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 중 1건이라도 미입력한 경우 계산불능 및 ‘0’점으로 평가됨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 아래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frac{\text{②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건수}}$	60%이상	8
		40%이상~60%미만	6
		20%이상~40%미만	4
		10%이상~20%미만	3
		10%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계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합산	120건이상	8
		100건이상~120건미만	6
		80건이상~100건미만	4
		60건이상~80건미만	3
		60건미만	0

① 신규 하도급건수

-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액)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해당 하도급대금 전부를 법정기일 도래 전(선급금 등 원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 기성·기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다음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완료)한 건수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정기일’ 및 ‘현금성결제 인정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현금성결제수단 인정범위

- 현금, 수표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 조기지급 예시 》

원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수령일 : 2023.7.1.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 2023.7.16.

조기지급 인정기한 : ~2023.7.15.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형태 [㉠ ~ ㉣]

㉠ (직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모든 하도급대금(선급금 포함)을 직접 지급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방법·절차 등을 합의하고 지급한 경우

㉡ (비직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조기지급**한 건수

㉢ (혼합)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혼합된 경우

- 수급인이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직불을 합의하여 수급인이 선급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조기지급 하고 기성(준공)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 등

- 종합건설사업자인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건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발주자’ → ‘수급인’, ‘원도급대금’ →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 ‘재하도급대금’으로 간주
- 하수급인의 선금금 포기각서 제출을 사유로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발주자가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특정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하고, 수급인 자신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로 대표사가 일괄지급하는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조기지급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4 전자하도급계약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전자하도급계약 건수 ① 신규 하도급건수	80%이상	4
	60%이상~80%미만	3
	40%이상~60%미만	2
	20%이상~40%미만	1
	20%미만	0

① 신규 하도급건수

- ▶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신규 하도급계약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전자하도급계약건은 평가대상에 포함

② 전자하도급계약건수

-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
- ▶ 전자문서용 인지세가 완납된 전자하도급계약만 인정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의 고유번호가 당해 공사건으로 확인되어야 함
-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전자계약시스템

- ▶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 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 계약당사자간 직접 방문 없이 양자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조회 및 출력 가능

다. 사실확인서류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단, 공공공사는 ㉠,㉡ 중 하나만 제출 가능) ㉠ 아래 ‘하도급대금 적정성 발주자확인서류’ 중 택일 - 하도급률 확인서 (‘마. 제출서류 작성요령 예시’(p.48) 참고) -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kon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출력물 하단 ‘확인 일시’가 표기되어야 함) - 발주청 하도급관리계획서 승인 공문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률 등 해당 하도급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발주청 자체 전산시스템상 하도급내용 승인 화면 캡처분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률 등 해당 하도급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아래 하도급계약 사실확인서류 중 택일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관련 보증서(계약일, 계약금액 등 하도급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하도급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또는 하수급인 확인서 또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통지서 또는 미승인하수급인사업장현황조회) - 하도급현장에 대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등
참고사항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 협정서(또는 구성사, 지분율이 표시된 도급계약서) 제출 가능

② 하도급 낙찰률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단, 공공공사는 ㉠ 하나만 제출 가능) ㉠ 아래 ‘하도급대금 낙찰률 발주자확인서류’ 중 택일 - 하도급률 확인서 (‘마. 제출서류 작성요령 예시’(p.48) 참고) -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kon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출력물 하단 ‘확인 일시’가 표기되어야 함) - 발주청 하도급관리계획서 승인 공문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률 등 해당 하도급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발주청 자체 전산시스템상 하도급심사내용 승인 화면 캡처분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률 등 해당 하도급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아래 하도급계약 사실확인서류 중 택일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관련 보증서(계약일, 계약금액 등 하도급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하도급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또는 하수급인 확인서 또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통지서 또는 미승인하수급인사업장현황조회) - 하도급현장에 대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등
참고사항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 협정서(또는 구성사, 지분율이 표시된 도급계약서) 제출 가능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형태에 따라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 (직 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모두 날인) ㉡ 전자매입세금계산서
	㉡ (비직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p.49) 참고 ㉡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및 입금증빙서류(입금증(발주자·수급인명 표시분) 또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증빙 등) ㉢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빙서류(입금증(원·하도급사명 표시분) 또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증빙 등)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경우, 지급증빙서류로 '원·하도급대금 청구지급목록' (지급상세포함) 제출 가능
	㉢ (혼 합) 수급인 지급과 발주자 직접지급이 혼합된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한 하도급대금 : ㉠의 ㉠, ㉡ } 모두 수급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 ㉡의 ㉠, ㉡, ㉢ } 제출
참고사항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공사로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또는 구성사, 지분율이 표시된 도급계약서) 제출 가능	

④ 전자하도급계약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하도급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신청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서류) ※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전자하도급계약은 인지세가 없으므로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빙 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또는 구성사, 지분율이 표시된 도급계약서) 제출 가능	

라. 시스템 입력요령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입력 TIP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과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된 자료 중 협력업자와의 신규 하도급계약 내용이 자동 표시됨. 하도급계약 건별로 상세내용을 추가 입력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1. 하도급대금적정여부

해당

해당사항 없음

①

- [민간공사] 발주자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률'에 '적정'하다고 확인한 공사
- [공공공사] 자동으로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로 인정

2. 하도급대금 낙찰률

②

입력값		하도급률
하도급 계약액	44 (백만원)	0.39 %
도급 부분 중 하도급 부분금액	112 (백만원)	

• 하도급률 = 하도급 계약액 /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적정성 현황

3.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여부

해당

해당사항 없음

③

- 기성액이 '0'인 경우 현금성 조기지급 입력불가
- 하도급대금 전부를 100% 현금성결제수단(이하 '현금성')으로 법정기일 도래전에 지급한 경우 입력지급방법

지급내역

지급방법	④		⑤	
	⑥ 적분(하도급대금 전체)	⑦ 혼합(적분+비적분)	⑧ 비적분	
현금성 지급액 (백만원)	10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수단 현금
현금성 지급액 상세	$\text{하도급(A)} = \text{현금성 지급액 (선금금)} / \text{하도급계약액} = 10 \text{ (백만원)} / 44 \text{ (백만원)} = 22.73\%$ $\text{원도급(B)} = \text{원도급 수령액 (선금금)} / \text{원도급계약액} = 1 \text{ (백만원)} / 44 \text{ (백만원)} = 2.27\%$ ※ 공도이행방식에 공동도급공사인 경우, 현금성 지급액, 현금성 수령액은 산정사본 금액을 입력 ※ 지급방법이 태비적분 인 경우,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A)이 100% 이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B)을 초과하여야 함 ※ 지급방법이 태비적분(하도급대금 전체) 태비적분(적분+비적분) 인 경우, 계약액 기준 수령/지급한 금액을 입력 (A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고, A가 B를 초과하지 않아도 됨)			
현금성 지급시기 상세	원도급 대금 수령여부	☒	최초수령일	2022-01-26
	하도급 선금금 현금성 조기지급액 (백만원)	10	최초지급일	2022-01-31
			최종수령일	2022-01-29
			수령횟수	1
			최종지급일	2022-02-16
			지급횟수	1

4. 전자하도급 계약여부

해당

해당사항 없음

⑥

전자계약시스템명	전자계약 번호	수입인지 고유번호
기타		
기타		

① 하도급대금 적정여부

- ▶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에 '해당' 클릭
 - 공공공사에서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 자동으로 해당 적용
 - 민간공사에서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로서 발주자 및 하수급인 모두가 해당 하도급건의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경우 (하도급률 확인서 제출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낙찰률

- ▶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금액'을 입력하면 하도급률이 자동 계산됨(하도급계약액은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입력값 자동 반영)
 - 모든 공공·민간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입력해야 하며, 하도급률 입력이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전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낙찰률' 평가시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 산정('0점' 처리)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여부

- ▶ 하도급대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조기지급한 경우, 현금성 조기지급 여부에 '해당' 클릭 후, 지급방식 및 지급내역을 순서대로 체크 및 입력
-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이 '0'인 경우는 현금성 조기지급 평가대상에서 제외

④ 지급방법

- ▶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방법을 아래 유형에서 체크
 - 직불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모든 하도급대금(선급금 포함)을 직접 지급
 - 비직불 : 수급인(신청사)이 하수급인에게 모든 하도급대금(선급금 포함)을 지급
 - 혼합(직불+비직불)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혼합된 경우

⑤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수단

- ▶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수단 : 현금, 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외담대 중 택일
 -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평가시 인정
- ▶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 지급액, 원도급대금 중 현금성 수령액을 입력
- ▶ 해당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당년도(2023년도)에 수령한 원도급대금과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최초·최종 수령·지급일을 입력하고, 총 수령·지급횟수를 입력
 - 하도급대금 전부를 법정기일 도래 전에 지급한 경우 현금성 조기지급건으로 인정
- ※ 혼합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한 경우, 수급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관련하여 현금성조기지급비율을 평가하므로 원·하도급의 선금금 수령 및 지급내역을 입력

⑥ 전자하도급계약 여부

- ▶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클릭 및 전자계약시스템명 선택
 - 전자계약 번호 및 수입인지 고유번호 입력

마. 제출서류 작성요령 (예시)

☐ 하도급률 확인서

하도급률 확인서					
※ 해당 '□' 에 √ 체크					
1. 원도급 공사 내용					
공 사 명(신고번호)	XX시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건설공사			공 종	토목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 수의 등 기타				
발주자	☒ 공공기관 ☐ 민 간	상호(기관명)	한국도로공사		
공사기간(계약년월) (착공년월)	2020.05. 2020.06.	총계약액	123,584백만원	당년도 기성액	45,678백만원
2. 하도급 공사 내용					
(대)업종 및 주력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 / 토공사	계약년월일	2023.03.30.	준공년월일	2025.04.30.
도급액(하도급부분) (A)	268백만원	하도급계약금액 (B)	227백만원	하도급률 (B/A)	84.61%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여부	☒ 적 정 ☐ 부 적 정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가이드] ▶ 금액(계약액 등)은 원단위 또는 백만원단위로 입력 가능 ▶ 공동도급방식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전체 총공사금액/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 명의 확인서+공동수급협정서(구성사, 지분을 표시된 도급계약서) 제출 가능 ▶ 적법한 재하도급공사인 경우, 발주자 → 원수급인, 수급인 → 하수급인, 하수급인 → 재하수급인으로 작성/확인 ▶ 발주자(관인) 등 3개기관 확인 필수 월 일 발주자 : LH (인) 수급인(대표사) : (주)♣♣종합건설 (인) 하수급인 : ◇◇◇토공(주)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작성가이드] ▶ 금액(계약액 등)은 원단위 또는 백만원단위로 입력 가능 ▶ 공동도급방식 원도급공사로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일괄지급한 경우, 대표사의 대금수령/지급내역서+증빙서류+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능									
1. 신청사 개요		상 호(대표자)		(주)♣♣종합건설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사명 (신고번호)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2023-0010)				발주자	서울시	
							공 종	건축	
	공사 (계약년월) 기간 (준공년월)		2023.05. 2025.03.	총계약액	3,232백만원		당년도 기성액	1,515백만원	
	구성사명1 (대표자)	(주)♣♣종합건설 (홍길동)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50%		도급금액	757백만원	
	구성사명2 (대표자)	♥♥건설(주) (김대한)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40%		도급금액	606백만원	
	구성사명3 (대표자)	♣♣개발(주) (이민국)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10%		도급금액	152백만원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1			현금	23.6.10	257백만원	257백만원	
	기성금	1	300백만원	23.7.31	현금	23.8.10	300백만원	300백만원	
	기성금	2	50백만원	23.9.30	현금	23.10.11	50백만원	50백만원	
	기성금	3	150백만원	23.11.30	현금	23.12.10	150백만원	150백만원	
계							757백만원	757백만원	
3. 하도급 내용									
계약 내용	(대)업종 및 주력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 / 토공사		업체명(대표자)		★★산업개발(주) (최강남)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2023.08.05. 2024.07.30.		총계약액	851백만원		당년도 기성액	425백만원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1			현금	23.8.19	85백만원	85백만원	
	기성금	1	75백만원	23.9.26	현금	23.10.25	75백만원	75백만원	
	기성금	2	265백만원	23.11.26	현금	23.12.24	265백만원	265백만원	
계							425백만원	425백만원	

6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평가

가. 개 요

- ▶ 협력업자에 대한 재무 및 교육 지원 실적을 평가 (배점 : 10점)

나. 세부 평가기준

① 협력업자 재무지원

- 아래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frac{\text{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text{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계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사이상	5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
		20개사미만	0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 '2023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법인)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예 시》

'2023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 A건설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 A건설을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총협력업자 업체수는 1개로 적용

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 당년도에 아래 '재무지원 인정 유형'에 따라 1개 협력업자(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재무지원 인정유형 [가 ~ 라]

- ㉠ 원도급계약 이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원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조기) 지급한 경우
※ 원도급공사가 자기공사인 경우 평가 비대상

- ㉡ ①당년도 신규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②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신청사가 당년도에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의 ③인지세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①,②,③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인정)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합계)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

[하도급계약액별 인지세 지원 인정금액]

①하도급계약액	②인지세액	③인지세 지원 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	2만원	6만원
3천만원 이상	4만원	12만원
5천만원 이상	7만원	20만원
1억원 이상	15만원	50만원
2억원 이상	15만원 ~	100만원

- ㉢ ①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②신청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행하고 ③협력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발행을 면제한 경우로서, 아래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별 ④수수료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①,②,③,④를 모두 만족한 경우 인정)

※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현장의 경우 인정 불가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

[하도급계약액별 수수료 지원 인정금액]

①하도급계약액	④수수료 지원 인정금액
4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 ㉣ 동반성장펀드*, 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 등으로 협력업자의 대출을 지원(대출이자 지원, 무이자 대출지원, 이자율 우대 등) 한 경우로서, 이자지원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협력업자와 당년도 하도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시 인정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 집행·관리)

- ▶ 하나의 협력업자(업체)에 대해 동일 지원유형 내*에서 지원(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재무지원 업체수에 포함

* 타 지원유형 간 지원금액 합산되지 않음

- 하나의 협력업자와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라도 1백만원이상 재무지원한 경우 재무지원 업체수에 포함

《예 시》

Q1. 협력업자 A사와 2023년에 2건 전자하도급계약(하도급계약액 철콘1.5억원, 승강기·삭도 1억원)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70%를 부담(철콘10.5만원, 승강기·삭도10.5만원)한 경우
☞ 재무지원 업체수 : 1개사 (유형:인지세지원, 지원액:지원인정액50만원x2건=1백만원)

Q2. 협력업자 A사와 2023년에 2건 전자하도급계약(하도급계약액 철콘1.5억원, 승강기·삭도 3천만원)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70% 이상을 부담(철콘10.5만원, 승강기·삭도2.8만원)한 경우
☞ 재무지원 업체수 : 0개사 (유형:인지세지원, 지원액:지원인정액50만원+12만원=62만원)

Q3. 협력업자 A사와 2023년에 ¹⁾전자하도급계약(계약액 1.5억원)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70%를 부담(10.5만원)하고, ²⁾동 하도급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등 원/하도급대금 수령 전 A사에게 50만원(현금)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 재무지원 업체수 : 0개사 (유형:1), 2) 한가지만 선택, 지원액:1), 2) 모두 1백만원미만)

② 협력업자 교육지원

■ 아래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입력·적용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② 교육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합계	③ 지원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합산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점수
		200인 이상	160인 이상	120인 이상	5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지원시 인정 가능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23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법인)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당년도에 아래 '④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른 '일반교육(㉞)', '법정윤리교육(㉟)'을 지원한 협력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전문공사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였더라도 지원업체수는 1개로 인정

《예 시》

'2023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서 '지반조성·포장업종 A사'와 '조경식재·시설물업종 A사'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하고,

1. A사 소속 직원 2인을 교육 지원한 경우 ➡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2. A사 소속 직원 1인을 2회에 걸쳐 교육 지원한 경우 ➡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 당년도에 아래 '④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라 '일반교육(㉞)', '법정윤리교육(㉟)'을 지원한 임직원수 합산

《예 시》

'2023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서 '지반조성·포장업종 A사'와 '조경식재·시설물업종 A사'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하고,

1. A사 소속 직원 2인을 교육 지원한 경우 ➡ 교육지원 임직원수는 2인에 해당
2. A사 소속 직원 1인을 2회에 걸쳐 교육 지원한 경우 ➡ 교육지원 임직원수는 1인에 해당

④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

- ▶ 협력업자 등이 ①당년도(2023년)에 아래 ②'일반교육(㉞)' 또는 '법정윤리교육(㉟)' 과정을 이수하고, ③신청사가 교육실비를 지원한 경우 인정(①,②,③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인정)

* 건진법상 건설기술인 교육,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불인정

- 신청사가 당년도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 협력업자가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선지급하고 그 협력업자에게 당년도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형태 모두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사·구성사 모두 해당 협력업자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인정 교육과정]

구분	㉞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일반교육)	㉟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법정윤리교육)
교육대상	협력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신청사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자의 임원
교육기관 / 과정	■ 교육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기관 ■ 교육과정 :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건설직종)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 등 자격증 취득교육,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이수 혹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원격훈련 심사결과 적합 확인서' 상 훈련과정만 인정 * https://www.hrd.go.kr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건설" 직종에서 검색 ※ 해당 훈련과정이 심사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직무 관련 교육이어야 함	■ 교육기관 : 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 교육과정 : 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 신규 건설사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

⑤ 산정방법 관련 우대사항

-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합산
- ▶ '④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른 '법정윤리교육(㉠)'(온·오프라인 교육)에 신청사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자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원수의 **3배**를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예 시》

▶ Case 1

총협력업자 업체수 100개사 중 상반기에 ㉠일반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자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10명인 경우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 \frac{24개사(20 \times 상반기1.2배) + 36개사(10 \times 상반기1.2배 \times 법정윤리과정3배)}{100개사} = 60\% \Rightarrow 5점$$

▶ Case 2

총협력업자 업체수 1,000개사이며, 상반기에 일반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자수가 20개사(20명), 하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50명인 경우

나.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24명(20명 \times 상반기1.2배) + 150명(50명 \times 법정윤리과정3배) = 174명 \Rightarrow 4점$$

다. 사실확인서류

① 협력업자 재무지원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 신청한 지원유형(㉠~㉣)별로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등 원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 수단으로 선지급	㉠ 원도급대금 수령증빙서류 및 하도급대금 지급증빙서류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조회결과, 조회기간 : 원도급공사계약일~하도급대금 지급일)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경우, ‘원도급대금청구지급목록’+‘하도급대금청구지급목록’ 출력물 제출 가능 (조회기간 : 원도급공사계약일~하도급대금 지급일)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CON 건설공사대장
	㉡ 협력업자와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 70%이상 부담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하도급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확인증(납부자, 납부금액 확인 가능서류) 또는 신청사 인지세 납부지원 증빙서류
	㉢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고, 협력업자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	㉠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발행 면제 사유서 ㉢ 원수급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내역 및 하수급인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내역 -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각각 공제조합 보증서발행내역 검색화면 캡처 출력물* * 검색시 발행일자를 하도급계약기간 전후 1개월로 하고, 신청사 회사명이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여 출력
	㉣ 협력업자에 펀드 또는 신청사 자금 등으로 하도급대금 외 대출이자 지원	㉠ 하수급인 대출입증서류(금융기관서류) ㉡ 신청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지급 거래내역증빙 ㉢ 원하수급인 대출지원 등 재무지원 확인서 (지원일자·금액·목적 기재, 원·하도급사 날인 필수)

② 협력업자 교육지원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 교육기관 입증서류(교육기관등록증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 - 온라인교육은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또는 원격훈련 심사결과 적합확인서(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교육수료증(교육기관 발행) ※ 참가자명(생년월일), 교육내용(과정, 시간), 교육비 납부내역, 수료여부, 관인 등 확인가능서류 ㉢ 교육참가자 재직서류(4대보험가입증명원) ㉣ 교육비 납입증빙(교육비 이체증, 세금계산서 등) ※ 신청사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교육비 지원한 경우, 교육비 이체증 등
참고 사항	▶ ‘<u>법정윤리교육</u>’을 이수한 경우, 필수제출서류 중 ㉡만 제출 가능 ▶ ㉠, ㉡, ㉢을 같음하여 ‘<u>훈련수료자보고서</u>’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을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업체로 구성사 모두가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및 신청사 교육비 분담서류 제출 가능

라. 시스템 입력요령

6.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입력 TIP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재무지원한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유형별 세부지원내용을 입력

재무지원

• 협력업자별 재무지원한 실적 입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지원내용	:: 전체 ::
조회							

재무	8 개사
----	------

1

10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	----	----	----	----	-------

☐	순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지원일자	지원내용	하도급 계약액	공사명	전자계약시스템명
☐	1	(주)한국건설		2023-01-01 2023-01-06	재무(전자계약시 인지세 70%이상지원)	300	화성 불링힐스 호텔 진입로 개보수 공사	신청사전자계약시스템
☐	2	(주)한국건설	010-0000-0000	2023-01-01 2023-01-04	재무(전자계약시 인지세 70%이상지원)	800,000	초고속 자가통신망(대사동 일원) 이전공사	건설공제조합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② 지원내용	선택		
③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지원일자	2023-01-01
하도급 공사명	화성 불링힐스 호텔 진입로 개보수 공사 조회		
하도급공사번호		하도급계약일자	2023-01-01
하도급계약액	300 백만원	전자계약시스템명	:: 선택 ::
전자계약번호		전자계약 고유번호	

※ 지원내용을 '하도급대금 선지급, 인지세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를 선택한 경우, 하도급공사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공사가 비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용역, 납품 등)인 경우 실적 불인정됨.

※ 지원내용을 '인지세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를 선택한 경우, 1개 협력업자별 지원인정금액이 1백만원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인 경우 실적 인정됨.

당년도 하도급계약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지원 인정금액 합계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공사명 / 공사번호/계약일자는 하도급계약액이 가장 큰 건을 기준으로 선택·입력하고, 하도급계약액은 합산금액을 입력함

① 추 가

-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② 지원내용

- ▶ 재무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 유형 중 택일
 - 원도급대금 수령전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 선지급
 - 전자하도급계약 인지세 70%이상 지원
 - 계약이행보증 면제
 - 대출이자 등 지원
- * 지원내용 선택시 보여지는 하도급내용(공사명, 계약액 등) 입력 필수

③ 상 호

- ▶ '상호'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체 중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

④ 지원일자

- ▶ 하도급대금 선지급일자, 인지세 납부일자 등 재무지원 일자를 달력에서 선택

7.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입력 TIP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교육지원한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내용, 교육기관, 교육과정, 참석자 정보 등을 입력

교육지원

· 협력업자별 교육지원한 실적 입력 ('지원내용'은 '법인수' 또는 '인원수'를 선택하여 통일되게 입력)

지원내용	:: 전체 ::	지원일자		참석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호명			
조회					

일반교육지원	0개사, 1명	법정윤리교육지원	3개사(명)
--------	---------	----------	--------

10
①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	순번	성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지원일자 (수료일자)	지원내용	교육기관명	참석자성명	주민번호 (6자리)
☐	1	(주)이마트	102-81-23458	2023-01-01	2023-01-07	교육(일반교육-인원수)	123		000103
☐	2	(주)이마트	102-81-23458	2023-01-01	2023-09-16	교육(법정윤리교육)	대한건설협회		111111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② 지원내용	선택 신청사의 임직원 ☐	
③ 성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수료일자 (지원일자)	※ 수료일자(지원일자)는 교육수료일자를 기재할 것 (교육신청일자, 교육비 결제일자 아님)	
교육과정명	※ 기초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성희롱예방교육등 법정의무교육은 비해당	
교육기관명		
참석자성명		주민번호 (앞6자리)

※ 성명, 생년월일 오타시 불인정

※ 교육비 당년도 지급 아닌 경우 불인정

① 추 가

- ▶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② 지원내용

- ▶ 교육유형 및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 중 선택하여 입력하되, 법인수 또는 임직원수로 동일유형으로 입력
 - 법인수-일반교육
 - 임직원수-일반교육
 - 법정윤리교육

③ 상 호

- ▶ '상호'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체 중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

④ 수료일자

- ▶ 교육을 수료한 일자(수료증상 교육일자)를 입력
 - 교육신청일자, 교육비 입금일자가 아닌 교육 수료일자를 입력

※ (유의) 참석자성명, 주민번호 오타 등으로 입력내용이 수료증 내용과 상이한 경우 불인정되오니 정확히 입력 요망

7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가. 개 요

- ▶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공동개발 실적 등을 평가 (배점 : 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

나. 세부 평가기준

- 배점(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 내에서 아래 각 평가항목별 다수의 협력업자를 반영하여 산정 가능

평가항목	점수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 2점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 2점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통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 ▶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협력업자가 신청사로부터 「기술개발비 수령 확인서」(부록. 붙임서식 참고) 상의 기술개발지원 항목으로 당년도에 1백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개발비용 지원시 인정 가능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 당년도에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를 등록한 경우로서 신청사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
-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가능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자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 ▶ ‘건설시공’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자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단,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 건이 관련 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실시권 또는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인정
-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원한 것으로 인정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 ▶ 신청사가 건설시공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년도에 협력업자에게 기술이전을 위해 해당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협력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교육 등 지원시 인정 가능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당년도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최종확인*을 받은 경우
 - 성과공유과제확인서 상 확인일자(발급일자)가 당년도인 경우 인정(확인서 상 과제기간, 유효기간은 평가기준 아님)
 - *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공유제 수행시 인정 가능

⑥ 비 고

- ▶ 하나의 협력업자에 대해 수차례 중복하여 기술지원을 한 경우라도 지원업체수는 1개로 판단

다. 사실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신청한 지원유형(①~⑤)별로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사실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기술개발비용 지급증빙서류(입금증(원·하도급사명 표시분) 또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증빙)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해당 특허증(또는 특허등록원부)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 협력업자의 특허증(또는 특허등록원부)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 특허정보 또는 신기술정보 검색화면 캡처 출력물 ※ 검색방법(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1)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지식재산권 검색 → 특허·실용신안 > 보유한 특허 검색 → 검색결과내용 상세정보 화면 캡처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 공법 등 선진기술을 이전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전수 교육 등을 실시	㉦ 신청사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 인력파견·기술전수교육 입증서류(아래서류 모두 제출) - 인력파견·교육실시 관련공문(교육일, 파견자(강사), 내용 등 명시) - 교육개요(일자, 시간, 내용 명시), 파견·교육강사 재직 증명서(특허권자 등 자격입증서류 포함), 교육자료, 교육참석자 서명부, 교육현장사진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 공유제를 수행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에서 발급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

라. 시스템 입력요령

8.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입력 TIP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기술지원한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유형별 세부지원내용을 입력

기술지원

협력업자별 건설사공 관련 기술지원한 실적 입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내용	선택	공사명	
조회							

개발비지원	2 개사	공동개발	2 개사	신기술보유업체 하도급	1 개사	선진기술이전	3 개사	성과공유제수행	1 개사
-------	------	------	------	-------------	------	--------	------	---------	------

10 ▼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순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자	지원일자	지원내용	세부내용	공사명
1	7733121234		2023-01-01	2023-01-06	기술(선진기술 이전)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② 지원내용

③ 상호

지원일자

성과공유제
수행 여부

선택

7733121234

2023-01-01

성과공유제
수행 여부

※ 지원유형은 기술개발비 지원, 공동개발, 신기술보유업체 하도급, 선진기술이전, 기술지원공역 구공일제, 성과공유제 등표기할 목적으로 작성
필수입력사항 입력

① 추 가

▶ 협력업자 기술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② 지원내용

▶ 기술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 항목 중 택일

- 개발비 지원
- 공동개발
- 신기술보유업체 하도급
- 선진기술 이전
- 성과공유제 수행

③ 상 호

▶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체 중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

8 상생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가. 개요

- ▶ 공공공사의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 실적을 평가 (배점 : 5점)

나. 세부 평가기준

■ 아래 '가'(최대 2점), '나'(최대 3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인정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아래 1) 또는 2)	1)20%이상 또는 2)20개 이상	2
	1) $\frac{\text{②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text{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1)10%이상 또는 2)10개 이상	1
	2) 상생협의회 운영현장수 합산	1)10%미만이고 2)10개 미만	0
나. 상생협의회 운영성과	③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2
	④ 자체적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1

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공공공사로서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단,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도급공사 현장은 제외

②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

- ▶ ①의 당년도 신규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한 현장수를 합산
-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의회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에 따라 공사기간 중 매월 상생협의회 운영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신청사가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사인 경우 상생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협정서 및 운영일지 상 기명 날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③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현장

- ▶ ②의 상생협의회 운영현장 중 발주자가 상생협의회 운영이 우수하다고 당년도에 표창장, 감사패 등(현장소장 수상도 인정)을 수여한 현장을 평가

④ 자체적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

- ▶ ②의 상생협의회 운영현장 중 자체적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음을 입증한 현장을 평가
- 원수급인이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하되,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상의 ‘평점’이 아닌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별도 평가

《예 시》

▶ 상생협의회 운영성과

- 상생협의회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 상생협의회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다. 사실확인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 신청한 평가방법(①~④)별로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가. 상생협의회체 운영 활성화	① 상생협의회체 운영 현장수 비율 또는 ② 상생협의회체 운영 현장수 합산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의회체 협정서’ (부록. 붙임서식 참고) - 발주자(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원·하수급인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 날인한 협정서 ㉡ 참석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현장별 ‘상생협의회체 월간회의 운영일지’, ‘상생협의회체 주간회의 운영 일지’(부록. 붙임서식 참고) ㉢ 회의 관련 사진
	나. 상생협의회체 운영성과	③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체 운영 관련 표창, 감사패 등 수여 현장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의회체 협정서’ (부록. 붙임서식 참고) - 발주자(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원·하수급인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 날인한 협정서 ㉡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부록. 붙임서식 참고)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서류 ㉢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현장소장 수상도 인정)
		④ 자체적으로 상생협의회체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의회체 협정서’ (부록. 붙임서식 참고) - 발주자(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원·하수급인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 날인한 협정서 ㉡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부록. 붙임서식 참고)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서류 ㉢ 상생협의회체 운영성과 사실확인서류 - 상생협의회체 월간회의 운영일지, 상생협의회체 주간회의 운영일지 및 회의 관련 사진
참고 사항	▶ 상생협의회체 운영회의가 비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의관련 사진을 관련공문과 화상회의 화면 캡처 출력물로 대체 가능		

라. 시스템 입력요령

9. 상생협업체 운영현황

입력 TIP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 중 신규 공공공사인 원도급공사 목록이 자동 표시되며, 공사건별로 상생협업체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사항을 입력

상생협업체 운영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공공공사에 대한 상생협업체 운영실적 등 입력
- * '4.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현황'에서 하도급정보가 있는 공사 건만 표시됨, 동 내용에 운영실적 등 세부 입력
- * 운영처리된 목록은 운영 실적을 미입력한 공사

공사명		발주자명		성과구분	:: 선택 ::
하도급사명		하도급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원도급, 공공, 하도급계약 체결공사)		1건	상생협업체 운영		1건
운영성과 우수(포상)	1건	운영성과 우수(포상없음)	0건	1	운영성과 없음
				0건	

10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	순번	신고번호	원도급공사		운영실적		하도급사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발주자명	성과구분	협업체구성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1	2023-0002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철도복원 건설공사 (제5차)	2023-12 2023-12	국가철도공단	운영성과 우수(포상)	2024-01-02	1971111111111 1000000000000

상생협업체 운영현황

상생협업체 운영현황

원도급공사			
신고번호	2023-0002	공사명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철도복원 건설공사 (제5차)
계약일자	2023-12	발주처명	국가철도공단

협업체 운영실적

② 성과구분	운영성과 우수(포상)	협업체 구성일	2024-01-02
③ 내용	내용내용		

협력업자 리스트 (선택된 업체만 상생협업체 운영,실적으로인정)

☐	업종	주력분야	사업자번호	상호
☒	금속창호,지붕	지붕조립	1000100000000	1000100000000

① 수 정

- ▶ 상생협의회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공사 건을 선택 후, 수정버튼을 클릭, 새로운 입력 창에 '협의회 운영실적' 입력 및 해당 '협력업자' 선택
-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국내 신규 공공공사 자동으로 업데이트
- '상생협의회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의회 협정서', '월간/주간 운영일지' 등 내용에 따름

② 성과구분

- ▶ 운영성과 유무에 따라 다음 중 택일
- 운영성과 우수(포상) :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 운영성과 우수(포상 없음) :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성과 없음

③ 내 용

- ▶ 상생협의회 운영 내용을 간략히 입력 (예 : '현장 시공방법/계획 논의', '작업환경 개선 협의', '시공효율화 방안 논의' 등)

9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가. 개 요

-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받은 표창 등 실적을 평가 (배점 : 3점)

나. 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3
② 시·도지사 표창	2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 ▶ 당년도에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 중앙행정기관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공공기관장, 단체장 표창은 불인정

② 시·도지사 표창

- ▶ 당년도에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표창에 한해 인정
 -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기타 지자체 공공기관장의 표창 수상은 불인정

다. 사실확인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표창장 등 수상실적 증빙서류 - 표창장에 상호협력 관련내용(원·하도급업체간 상생 및 협력증진, 원·하도급간 상호이해와 협력, 공정한 하도급문화 형성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라. 시스템 입력요령

10.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입력 TIP

당년도 상호협력 관련 표창 수상 실적 또는 모범업체 지정 실적 등을 입력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 상호협력 관련 표창 또는 모범업체 지정 실적 입력

구분: :: 전체 :: 수여기관: 조희

중앙행정기관의장 표창	3 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표창	1 건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표창	2 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3 건	전체	9 건
-------------	-----	---------------	-----	-------------------	-----	---------------	-----	----	-----

10 ▾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다운로드

☐	순번	구분	수여기관	수여일자	수여내용
☐	1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국방부	2023-01-10	TEST
☐	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국토교통부	2023-01-11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② 구분	:: 선택 :: ▾
수여기관	
수여일자	
③ 수여내용	

① 추 가

▶ 표창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구 분

▶ 수여기관 종류를 선택하고, '수여기관명'에 구체적 기관명을 기재

③ 수여내용

▶ 표창장 상의 상호협력 관련 문구('원·하도급업체간 상생 및 협력증진', '공정한 하도급 문화 형성 기여' 등)를 간략히 기재

10 제재처분 감점

가. 개요

- ▶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부실시공, 갑질,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하여 건산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점수(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 20점)에서 감점

나. 세부 평가기준

■ 아래 '①의 원인행위'로 '②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③점수' 적용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주요내용	관련조항	처분기관
• 부실시공	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관련	지자체
• 하도급 자격 제한, 하도급관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불공정행위 금지 등	건산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관련	지자체
•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48조 관련	공정위
• 건산법 등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관련	국가·공공기관 등
• 건산법 등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관련	지자체 등

② 제재처분 유형	③ 점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제재처분 원인행위에 따라 감점 상이)	-1 / -2*
과태료 1회당	-2
벌금 또는 고발 1회당	-3
과징금 1회당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당	-10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법위반행위로 한정
- ▶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② 제재처분 유형

- ▶ ①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처분받은 ②의 제재처분 유형(종류)으로 한정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과태료, 고발 또는 벌금,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처분으로 한정 ※ '경고'는 감점대상 아님

③ 점 수

- ▶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한 후 잔여점수 부여
-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경우 제재처분 원인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 하도급 관련은 처분 1회당 1점 감점
 - 부실시공, 갑질, 부당내부거래 관련(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공정거래법 제45조~제48조)은 처분 1회당 2점 감점
- ▶ 건산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하도급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다. 사실확인서류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KISCON 등을 통해 확인)

라. 시스템 입력요령

11. 제재처분 받은 현황

입력 TIP

당년도 제재처분 사항을 추가하여 처분기관, 처분일자 등을 입력

제재처분 현황

· 공사대금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 제재처분 현황 입력

구분: 전제 처분기관명:

제재처분 현황

2 구분: 선택 ...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선택 ...

1

과징금 0 건 임찰참가제한, 영업정지 2 건

전제 5 건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다운로드

구분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2	2023-01-03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3	2023-01-19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3	2023-01-12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1 추 가

- ▶ 제재처분건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 ▶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처분을 수차례 받은 경우에도 제재처분건별로 각각 모두 입력

2 구 분

- ▶ 제재처분 종류 및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중 택일
 - 시정명령, 지시(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위반)
 - 시정권고(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위반)
 - 과태료
 - 고발, 벌금
 - 입찰참가제한
 - 시정명령, 지시(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 시정권고(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 과태료(하도급계약 지연통보, 변경미통보)
 - 과징금
 - 영업정지

3 처분사유

- ▶ 제재처분 원인사유를 다음 중 택일
 -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등

11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평가

가. 개 요

- ▶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에 따라 평가 (배점 : 5점 ~ -13점)

나. 세부 평가기준

산정방법	평가기준		② 점수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당년도 및 전년도	0명(2년이상)	5
	당년도	0명(1년이상)	3
		0명초과~1명이하	-3
		1명초과~2명이하	-5
		2명초과~3명이하	-10
		3명 초과	-13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정·확인된 당년도 사망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 신청사에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재 책임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사망자수는 산정시 제외**
 - 추후 산업재해 확정되는 경우 차년도(확정년도) 평가에 반영
- ▶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

② 점수 산정방법

- ▶ 당년도(2023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당년도 및 전년도(2022년)에 사망자수가 '0'명인 경우 5점 부여
- ▶ 다른 신인도 평가분야(표창 실적, 제재처분) 점수와 합산하여 대기업은 최대 18점, 중소기업은 최대 28점 내에서 감점

다. 사실확인서류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

라. 시스템 입력요령

12. 사망사고 현장 평가

입력 TIP

2023년 산업재해가 확정된 사망사고 현장을 추가하여 사고내역을 입력

사망사고 현장 현황

• 건설현장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입력

공사명 발주자명

조회

1 총 사망자수 2 명 당년도 3 건 전년도 0 건

10 >

2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다운로드

사망사고 현장 현황

3 공사명	발주자명	사망사고발생일자	4 사망자수	비고
			명	

사망사고 발생/확정일자	사망자 수	비고
2023-01-17	2	
2023-01-04	1	

1 총 사망자수

- ▶ 입력한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와 전년도 고용노동부 확인자료(전년도에 통보, 평가시 적용된 자료)의 합산 인원이 표기됨

2 추 가

- ▶ 당년도 사망사고 발생 현장이 있는 경우 또는 당년도이전 사망사고 발생현장으로 당년도에 산업재해가 확정된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3 공사명

- ▶ 사망사고 발생 현장의 공사명을 입력

4 사망자수

- ▶ 해당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입력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인 경우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하여 입력

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가. 개요

- ▶ 건설공사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가점 부여 (최대 +5점)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 ※ 원수급인이 협력업자를 통해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원수급인이 직접 인력고용 및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는 비해당)

나. 세부 평가기준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frac{\text{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text{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times$	70%이상	+5.0	60%이상	+5.0
	60%이상~70%미만	+4.0	50%이상~60%미만	+4.0
	50%이상~60%미만	+3.0	40%이상~50%미만	+3.0
④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개월수 평균	40%이상~50%미만	+2.0	30%이상~40%미만	+2.0
③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30%이상~40%미만	+1.0	20%이상~30%미만	+1.0
	20%이상~30%미만	+0.5	10%이상~20%미만	+0.5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모든 국내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누계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장은 제외
- 건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신청사)가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장 포함
- 자기건설공사 현장 포함

민간공사의 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발주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

- ▶ ①의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 업자에게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한 현장수 합산
 - 원수급인이 협력업자를 통해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원수급인·하수급인·임금/자재장비업자가 합의하여 원수급인이 임금/자재장비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인정
 - ※ 원수급인이 직접 인력고용, 인건비 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없음
 - 건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신청사)가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신청사(하수급인)가 원수급인의 자격으로 협력업자(재하수급인)를 통해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인정
- ▶ ①의 현장 중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으로 협회에 신고('24.3월)·인정된 공사로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공사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일부 하도급공사에 대해 동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소명 필요 * 공사 착공 지연, 공사 중지 등
- ▶ 임금의 경우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연 또는 일괄지급의 경우 불인정
-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③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 ▶ ②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 '공사개월수'는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의 계약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 단, 계약연월이 1.1일 이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시작일을 1.1로 설정하고, 준공 예정연월이 12.31일 이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종료일을 12.31.까지로 설정
- ※ 뒷페이지 예시 참조

④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개월수 평균

- ▶ ③의 총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다수의 하도급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하도급공사와 마지막으로 지급된 하도급공사를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⑤ 평가기준

- ▶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백분율)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 부여
- ▶ 실적비율 산정시 소수 첫째자리(미만절사)까지 산출

《예 시》 2023년 기성실적이 발생한 민간공사 현장이 3개인 업체에 대한 평가

공사명	공사기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자재장비비 지급			
	계약년월 ~ 준공(예정)년월	실제 총 개월수	설정 (반영) 개월수 ※'23년도	활용 여부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대상월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기간) 최초~최종지급일	(반영) 개월수 ※'23년도
A 현장	'22.01 ~ '24.02	25개월	<u>12개월</u>	활용	1~12월분	'23.01.15~24.01.15	12개월
B 현장	'23.06 ~ '24.04	10개월	<u>7개월</u>	활용	7~11월분	'23.07.25~23.12.23	5개월
C 현장	'23.10 ~ '24.08	10개월	<u>3개월</u>	미활용	-	-	-

-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3건 (A, B, C 현장)
-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장수 : 2건 (A, B현장)
- ③ 공사기간 개월수(임금 및 자재장비대 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9.5\text{개월} = (12\text{개월}+7\text{개월}) \div 2$
- ④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개월수 (임금 및 자재장비대 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8.5\text{개월} = (12\text{개월}+5\text{개월}) \div 2$

$$\text{❖ 평가산식 : } \frac{\text{②}}{\text{①}} \times \frac{\text{④}}{\text{③}} = \frac{2}{3} \times \frac{8.5}{9.5} = 0.596491.... \Rightarrow \underline{59.6\%}$$

다. 사실확인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지급화면 캡처 출력물 (신청사명, 현장명, 임금/자재 장비대금지급 대상월, 월별지급일자, 지급처 등 내용 포함) ※ 신청사가 시스템운영사의 협회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시스템운영사를 통해 협회가 직접 확인 가능 ㉡ 근로자공제회에서 발행한 현장별 '공제가입자별 퇴직공제자료 이행현황' 또는 공단에서 발행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장근로자수 확인용)
참고사항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대표사 명의를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 협정서(또는 구성사, 지분율이 표시된 도급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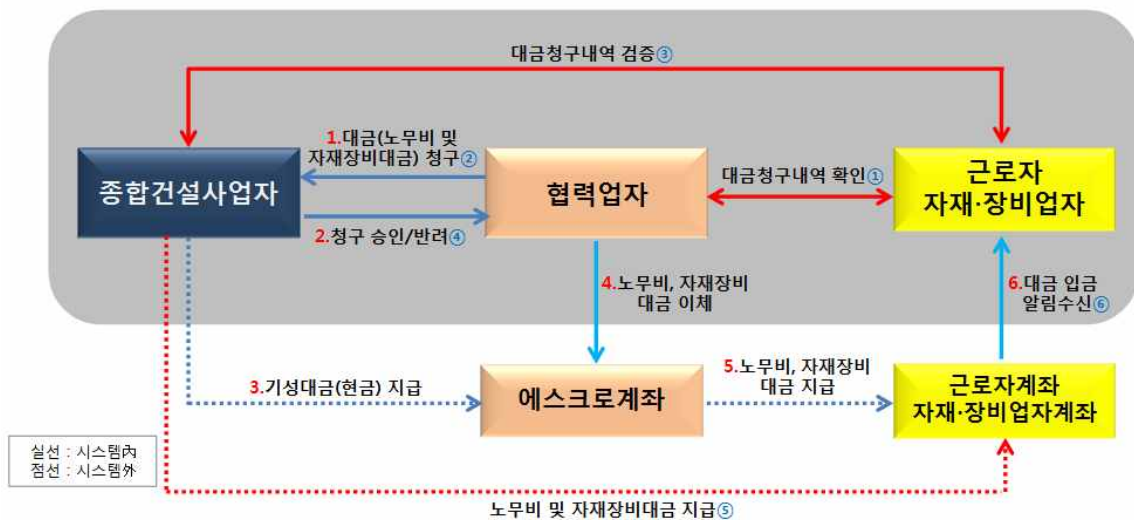
■ 원수급인이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기능을 갖출 것. 즉,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업자의 인출 제한기능을 갖출 것 (에스크로 계좌 등 활용)

- 다만,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

■ 원수급인이 지급할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청구 및 승인기능이 있어야 하며, 원수급인 및 협력업자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을 갖출 것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흐름도 >



*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노무비 지급 : 1~6

*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임금청구에 따라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 : ①~⑥

※ 필요시 평가기관(협회)에서 해당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하여 검증 실시

라. 시스템 입력요령

13. 민간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입력 TIP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을 기준으로 당년도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을 추가하여 시스템명, 활용개월수 등을 입력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 민간공사에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입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실적) 입력
*신고할 원도급공사(계약액이 5천만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1개월 초과)를 추가하여 세부내용 입력

공사명		발주자		:: 선택 ::		~						
조회												
전체 민간공사 현장(KISCON 신고자료 포함)		41 건		임금/자재비 지급한 현장수		9 건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개월수 평균값		7.22 개월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자재비지급개월수 평균값		6.55 개월						
10				1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순번	신고번호	원도급공사(신청사기준)				발주처	공사 개월수	활용시스템	대금지급시스템 활용개월수			
		계약년월	준공년월	기성액	총계약액				청구승인 지급가능	인출제한 기능	시작월 종료월	활용개월수
1	2020-1115	ddddd				-	10	노무비닷컴	Y	Y	2023-01 2023-11	1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원도급공사

2	공사명		조회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공사기간	개월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총계약액 (백만원)
	발주자명		

시스템 활용내역

활용시스템명			
청구승인 지급가능		실시간 지급확인기능	
인출 제한기능			
시작월		종료월	
3	활용개월수	개월	

① 추 가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민간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 ‘하도급대금 현금성조기지급’ 메뉴에서 ‘직불’로 신고된 공사의 경우, 신고대상 공사에서 제외(조회 불가)

② 공사명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공사기간’, ‘당년도기성액’, ‘총계약액’, ‘발주자명’ 자동 입력 가능

③ 활용개월수

- ▶ 시스템 활용 시작월, 종료월을 입력하면 활용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됨

13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가. 개 요

- ▶ 협력업자의 해외건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에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 (최대 +3점)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나. 세부 평가기준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대기업	중소기업	
① 해외건설공사로서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① 해외건설공사

- ▶ 2024년 대한건설협회 및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협력업자의 당년도 (해외)기성실적이 발생한 공사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 ▶ 신청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자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건은 구성사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

다. 사실확인서류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확인)
 - ※ 단, 해외건설협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 업체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시스템 입력요령

14.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입력 TIP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협력업자가 함께 공사에 참여한 공사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

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동반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실적 입력
*신고할 원도급공사를 추가하여 세부내용 입력(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이 1백만원 이상인 현장에 대해 입력 가능)

공사명		발주처		구분	:: 선택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해외 동반진출건수		3 건
-----------	--	-----

①

10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다운로드
----	----	----	----	----	--------

□	순번	원도급공사(신청사기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처	구분	상호	업종	계약일자	총계약액
			계약년월	준공년월	기성액						
□	1	2022-0069	쿠웨이트 슈와이크 항만 개보수 공사 (KSPO)			쿠웨이트	하도급	(유)키두라미	가스난방	2023-12-27	1000
		2022-10	2025-12	0	중동	616-88-12314				2023-12-27	100

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

원도급공사

② 공사명		조회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발주자명		
국가명	:: 선택 ::	

동반진출업체 공사현황

업종	:: 선택 ::	주력분야	:: 선택 ::
③ 상호			
④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동반진출업체			
총계약액 (백만원)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① 추 가

- ▶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해외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공사명

- ▶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공사기간', '당년도기성액', '총계약액', '발주자명' 자동 입력 가능

③ 상 호

- ▶ 우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2023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 중 동반진출한 협력업자를 선택

④ 구 분

- ▶ 동반진출업체의 참여 유형에 따라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선택

※ 미평가

(국토부 기선정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유효기간 만료
(2022.12.31.)로 2023년도 중 대상기업 없음)

15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가. 개요

-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평가 (최대 +8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비계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나. 세부 평가기준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80%이상	+8
	65%이상~80%미만	+6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2
	20%이상~35%미만	+1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수

-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국내 민간 건축공사로서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 자기공사에 대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건 포함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수

- ▶ 2019년 7월 15일 이후* 원도급 계약한 국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당년도 (2023년)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현장수를 합산
* 관련고시 개정·시행일
- 실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한 경우 사용년도의 실적으로 인정(하나의 현장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일체형 작업발판이 설치·사용한 경우 1회만 인정)

《예 시》

'23.1월 공사계약(A), '24.2월 시스템비계 설치(B)한 현장의 사용실적 산정

- ☞ 2024년 상호협력평가지(2023년도분 실적 평가)
 - 분모값 계산시 A는 1건 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적용되지 않음
- ☞ 2025년 상호협력평가지(2024년도분 실적 평가)
 - 분모값 계산시 A는 미적용(전년도에 기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1건 적용됨

-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에게 동일하게 사용 현장 수로 적용

③ 평가기준

- ▶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누락 또는 미신고한 공사를 당년도에 실적신고한 경우
 '①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및 '②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에 모두 적용

《예 시》

- ▶ '22.12월 원도급계약 1건 체결, '23.1월 착공 및 일체형작업발판 설치·사용한 현장
 ▶ '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기성이 없어 미신고하고, '24년 실적신고시 최초신고
 ▶ '24년 상호협력평가지 일체형작업발판 설치·사용실적으로 제출함
- ☞ 2024년 상호협력평가(2023년도분 실적) 일체형작업발판 활용실적 평가시,
 분모값(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및 분자값(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에 모두
 1건씩 반영

다. 사실확인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제출	▶ 일체형 작업발판 장비임대업체(이하 '임대업체')와의 계약형태에 따라 다음서류 ㉠~㉣을 모두 제출
	원수급인이 임대업체와 직접 계약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확인서(감리자 또는 발주자 확인본, 부록. 붙임서식 참고) ㉡ 일체형작업발판 임대계약서(신청사↔임대업체) ㉢ 전자세금계산서(신청사↔임대업체)
	하수급인 (협력업자)이 임대업체와 직접 계약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확인서(감리자 또는 발주자 확인본, 부록. 붙임서식 참고) ㉡ 일체형작업발판 임대계약서(하수급인↔임대업체) ㉢ 전자세금계산서(하수급인↔임대업체) ㉣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공사내역서*(신청사↔하수급인) *시공범위에 일체형작업발판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문, 하도급견적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제출 가능
필수제출	발판을 보유한 하수급인(협력업 자)과 계약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확인서(감리자 또는 발주자 확인본, 부록. 붙임서식 참고) ㉡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공사내역서(신청사↔하수급인) ㉢ 전자세금계산서(신청사↔하수급인) ㉣ 하수급인의 일체형 작업발판 장비구입·보유입증서류 (구입영수증,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서 등)
필수제출	원수급인이 보유한 발판을 사용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확인서(감리자 또는 발주자 확인본, 부록. 붙임서식 참고) ㉡ 하수급인의 일체형 작업발판 장비구입·보유입증서류 (회계원장, 구입영수증,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서 등)
참고사항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 명의의 상기 필수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또는 구성사, 지분율이 표시된 도급계약서) 제출 가능

라. 시스템 입력요령

16.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입력 TIP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국내 신규 민간건축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황을 추가하여 세부 내용을 입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 2019.07.15일 이후 신규 원도급계약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당년도(2023년)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현장 입력
 * 신고할 원도급공사를 추가하여 세부내용 입력 (음영처리된 목록은 '작업발판 설치년월' 미입력한 공사)
 * 실적신고('24.2.1~2.15')된 '일체형 작업발판' 실적이 자동으로 표시되었으며, 등 내용에 추가/삭제/수정하여 입력 (음영처리된 목록은 '작업발판 설치년월' 미입력한 공사)

공사명: [입력창] 발주자명: [입력창] [조회]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2 공사명: [입력창] [조회]

신고번호: [입력창]

계약년월: [입력창] 준공년월: [입력창]

작업발판 설치년월: [입력창] [캘린더 아이콘]

공종: [입력창]

발주자명: [입력창]

<< >> 저장 닫기

설치현장 7 건

1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엑셀업로드

준공년월	작업발판 설치년월	발주자명	공종
2023-12	2023-06	(주식회사) 대한건설	건축
2023-12	2023-01	테스트&기관	건축
2023-10	2023-01	-	건축
2023-12	-	건설공제조합	건축
2024-01	2023-01	-	건축
2025-01	2023-04	건협	건축
2023-12	2023-01	-	건축
2026-02	2023-01	신한자산신탁	건축

8 2023-0031 동탄2 업무4블럭 오피스텔 2023-01 2026-02 2023-01 신한자산신탁 건축

1 추 가

▶ '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국내 신규 민간건축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 '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신고한 일체형 작업발판 활용실적이 자동으로 보여짐

2 공사명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종', '발주자명' 자동 입력 가능

16 신청내용 확인 및 온라인 자료전송 [신고·제출]

가. 신청내용 확인

신청서 표지

- 평가시 적용되는 총기성액은 2023년도 공사실적 확정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키스콘에 유지보수공사 종합실적을 신고한 경우, 해당금액 포함

1 신청사 총기성액	000 백만원	총합력업자 범인수계	220
출력			

※ 평가시 적용되는 총기성액은 2023년도 공사실적 확정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분야	상세내용	신청점수
1.공동도급실적 (10점)	·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5점)	0
	· 나. 지역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5점)	0
2.하도급실적 (20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0
	·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37점)	14
	(1)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시기등의 적정성(27점)	14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10점)	8
	② 하도급 낙찰률(5점)	0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자금(8점)	4

① 총기성액 (국내분)

- ▶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는 '23년도 국내공사 기성액(누락 신고분 제외)이 자동 입력됨
- ▶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총괄표 상의 합계' 중 '국내기성액 합계(누락분제외)' 금액으로 평가됨
- ▶ 신청사가 대기업으로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하도급실적이 자동 합산됨
- ▶ 총기성액이 미입력된 경우 하도급실적 비율이 산정되지 않음(0점 처리)
- ▶ 신청사에서 입력한 총기성액과 협회에서 '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평가 후 확정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협회에서 확정된 총기성액으로 평가함

※ '24.6월 중 상호협력평가 중간평가결과 통보시 확정된 총기성액 반드시 확인 요망

② 신청점수

- ▶ 신청사가 입력한 실적 등이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입력됨

나. 신청내용 확정 및 온라인 자료전송

업체정보 신고서 작성 내용확정 및 접수증발급 서류출력 마이페이지

☞ 내용 확정 및 접수증 발급 > 내용 확정 및 접수증 발급

내용 확정 및 접수증 발급

2023년도 상호협력 평가 내용 확정 및 자료전송(제출)

1. 업체 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작성완료
2. 2023년도 협력업체 관리대장 (주력분야 기준)	249 건
3. 신청 점수	44.5 점
전송일자	2023.03.17 14:48:34

이전으로
(작성내용을 다시 확인 하겠음)
←

1
신청내용 확정 및 자료전송
(자료전송시 신청접수 완료됨)
→

- 내용확정 및 전송(자료제출) 후에는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자료전송(제출) 이후 신청내용을 수정한 경우, 자료전송 재전송 필수(자료전송하여야 최종입력된 자료로 제출, 검토됨)
- 접수현황은 신고안내시스템(cons.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진행-접수 상태확인 메뉴에서 확인가능

1 신청내용 확정

▶ 신청내용 확정(버튼 클릭)시 온라인자료전송(제출) 됨

※ 신청시스템을 통해 3.15일까지 최종 전송(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됨
(상기 자료전송·제출기한 경과 후에는 기존 자료확정 내용 수정 불가)

▶ 신청내용확정 및 자료전송 전, 공동인증서를 통해 기업정보 확인

▶ 자료 전송 1시간 이후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에서 전송결과 확인 가능

17 (상호협력평가 신청 이후) 사실확인서류 제출방법

제출 대상공사 확인 및 제출기간 : 2024. 3. 22.(금) ~ 4. 2.(화)

※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제출방법 : ①제출 대상공사 및 제출서류 확인 → ②사실확인서류를 스캔 하여 전자파일 형태(pdf)로 업로드

① 제출 대상공사 및 제출서류 확인

▶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하단 ‘사실확인서류 조회’ 클릭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방법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사실확인서류 업로드’ 클릭 → ‘신고안내 통합 파일업로드’ 새창 열림 → 사실확인서류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자파일(pdf 등)로 업로드

The screenshot shows the '신고안내 통합 파일업로드' (Report Guide Integrated File Upload) page. The interface includes a sidebar menu on the left with options like '상호협력평가신청', '협력업자', '공동도급', '하도급실적', '하도급 적정성/낙찰률', '현금성조지급', '전자하도급계약', '재무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상생협력제 운영', '표창', '제재처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해외동반', '선도기업 협력실적', '일체형작업별판', and '매합표(매입서별)'.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신고안내 통합 파일업로드' and contains instructions for uploading documents. Red dashed boxes and arrows highlight the following steps:

- ① 신고 통합 파일업로드 창 (팝업/새창으로 열림)**: Points to the '신고안내 통합 파일업로드' button in the top navigation bar.
- ② 업로드 할 해당항목 클릭**: Points to the '하도급 적정성/낙찰률' item in the sidebar menu.
- ③ 해당 파일 찾기 또는 파일 드래그**: Points to the '찾기' (Find) button in the file upload section.
- ④ 업로드버튼 클릭**: Points to the '업로드' (Upload) button in the file upload section.
- ⑤ 업로드(완료) 확인**: Points to the '건설사업자가 업로드한 파일목록' (List of files uploaded by construction business) table at the bottom, which shows a file named '(하도급금 적정성/낙찰률) 대한건설_적정낙찰_3건.pdf'.

IV. 부 록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표1, 별표2, 별지서식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121호 (2021년 9월 30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업체 구성·운영)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업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업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 <삭 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사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①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14.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현황(별지 16호 서식)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 대비 지역업체의 당년도 공사실적 합산액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37 27 10 5 8 4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 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 업자당 각 1점)	10
	다. 상생협업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업체 운영실적	5 2 2 1 3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4. 신인도(1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0 (없는 경우)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2) 고발 1회	-3
	(3) 과징금 1회	-5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
	(1) 0명(2년 이상)	5
	(2) 0명(1년 이상)	3
	(3) 0명 초과 1명 이하	-3
	(4) 1명 초과 2명 이하	-5
	(5) 2명 초과 3명 이하	-10
	(6) 3명 초과	-13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 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5.0
	(2) 70%~60%	+4.0
	(3) 60%~50%	+3.0
	(4) 50%~40%	+2.0
	(5) 40%~30%	+1.5
	(6) 30%~2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5건 이상	+3
	(2) 3건~4건	+2
	(3) 1건~2건	+1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8 (2) 65%이상~80%미만 +6 (3) 50%이상~65%미만 +4 (4) 35%이상~50%미만 +2 (5) 20%이상~35%미만 +1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25
	(1) 40%이상	25
	(2) 30%이상 ~ 40%미만	20
	(3) 20%이상 ~ 30%미만	15
	(4) 10%이상 ~ 20%미만	10
2. 협력업자 육성 (4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
	② 하도급 낙찰률	5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
	④ 전자 하도급계약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5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 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업체 운영실적	3
3. 신인도(2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 (없는 경우)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2) 고발 1회	-3
	(3) 과징금 1회	-5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0명(2년 이상)	5
4. 가점	(2) 0명(1년 이상)	5
	(3) 0명 초과 1명 이하	3
	(4) 1명 초과 2명 이하	-3
	(5) 2명 초과 3명 이하	-5
	(6) 3명 초과	-10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 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13
	(2) 60%~50%	5
	(3) 50%~40%	5
	(4) 40%~30%	3
	(5) 30%~20%	-3
	(6) 20%~10%	-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3건 이상	+5.0
	(2) 2건	+4.0
	(3) 1건	+3.0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2.0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1.0
		+0.5
		+3
		+3
		+8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2) 65%이상~80%미만	+6
	(3) 50%이상~65%미만	+4
	(4) 35%이상~50%미만	+2
	(5) 20%이상~35%미만	+1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업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업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업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 및 그 협력업자의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다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7. 라 항목은 전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전년도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는 업체 중 전전년도에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을 부여한다.
8. 평가항목별 점수(가감점)는 각각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등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사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 (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1)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2)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 (4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②하도급 낙찰률 (5점) ③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④전자하도급계약 (4점)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신청점수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 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1)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2)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3. 신인도 (2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3점) : 회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 (2점)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점)	(1)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2)과태료 : 회 (3)고발 : 회 (4)과징금 : 회 (5)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1)시정명령 : 회 (2)고발 : 회 (3)과징금 : 회 (4)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점)	명		신청점수
4. 가점 (19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5점)	(1)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협력실적 (3점)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 건수 : 건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8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지급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2.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13.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실적 현황. 끝.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주력분야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협력업자수						개사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 공사지역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 영업소재지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당년도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지역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3. 공사지역 및 협력업체의 영업소재지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기재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주력분야	하도급기성실적	
					건 수	금 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illegible]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지원분야명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1					
2					
3					
4					
5					
6					
7					
8					
9					
10					
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개사		

상생협의회체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 사 명	총계 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 영 실 적		
	준공년월	발주자명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 시 (협약체결일 ,회의일 등)	내 용	성과 / 효과
1									
2									
3									
4									
5									
6									
7									
8									
9									
10									

총 상생협의회체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 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No	해외공사 현황			협력업자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발주자 (국가명)	공사명	계약일자 / 준공일자	동반진출 형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중 한 가지 기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계약일자 / 준공일자	공동도급 (하도급) 총계약액 (백만원)	공동도급 (하도급)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협력업자와 동반진출 한 해외공사 건수 : 건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해외 동반진출실적 불인정

[별지 15호 서식]

[illegible]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No	원도급공사 현황			협력업자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공사명	발주자	계약일자 / 준공일자	동반진출 형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중 한 가지 기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계약일자 / 준공일자	공동도급 (하도급) 총계약액 (백만원)	공동도급 (하도급)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한 공사 건수 : 건										

참고2 : 상호협력평가 사실확인서류 관련 서식

<붙임1>

하도급률 확인서					
※ 해당 '□' 에 √ 체크					
1. 원도급 공사 내용					
공 사 명(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 수의 등 기타				
발주자	☐ 공공기관 ☐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2. 하도급 공사 내용					
(대)업종 및 주력분야	/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A)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률 (B/A)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여부	☐ 적 정 ☐ 부 적 정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인)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발주자		
							공 종		
	공사 (계약년월) 기간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구성사명1 (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2 (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3 (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 내용	(대)업종 및 주력분야		/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 발 주 자 : 0000 예산회계과장 000 (인)
- 원수급자 : 0000 현장대리인 000 (인)
- 하수급자 : 0000 현장소장 000 (인)
- 0000 현장소장 000 (인)
- 0000 현장소장 000 (인)
- 0000 현장소장 000 (인)

<붙임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	☐ 월간회의 ☐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 발급 ☐ 미발급 ☐ 면제 ☐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 조정 ☐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 지급 ☐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 적정 ☐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평가일시	년 월 일 (요일)	평가자	원수급인 (인)
공사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의체 구성원	발 주 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illegible]

<붙임7>

해외공사 동반진출 실적 확인서

평가신청 업 체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공 사 명						
현장소재지						
공 종		발 주 처			국 가 명	
신 고 번 호	-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공사 내역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명					공 종	
발 주 자 (원수급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천원
위의 해외 건설공사 동반진출 수급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대표자) : 하수급인 : (인)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첨부 :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원.하도급 기성실적증명서 각 1부						

<붙임8>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확인서

1. 건설사업자(원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공사명

공종

발주자

현장소재지

공사기간

작업발판
사용기간

상기 현장은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사용한 현장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감리자(발주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붙임 : 1.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계약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각 1부
2. (감리자가 확인한 경우) 감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리계약서 또는
감리업등록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등) 1부.

종합 및 전문건설업, 환경관련 공사업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구 분	업 종 명				
종 합 공사업	1.토목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2.건축공사업		5.조경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구 분	업 종 명	업무분야(주력분야)	업 종 명	업무분야(주력분야)	
전 문 공사업	1.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1) 토공사	9.철도 、 궤도공사업	철도 、 궤도공사	
		2) 포장공사	10.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3)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11.수중 、 준설공사업	1)수중공사 2)준설공사	
	2.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12.승강기 、 삭도공사업	1)승강기설치공사 2)삭도설치공사	
	3.금속창호 、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13.기계가스설비 공사업	1)기계설비공사 2)가스시설공사(제1종)
		2) 지붕판금 、 건축물 조립공사	1)가스시설공사(제2종)		
	4.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 도장공사	14.가스난방공사업		2)가스시설공사(제3종)
		2) 습식 、 방수공사 3) 석공사			3)난방공사(제1종)
	5.조경식재 、 시설물 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4)난방공사(제2종)
	6.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			5)난방공사(제3종)
7.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				
8.상 、 하수도설비 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15.시설물유지관리업	-		

■ 환경관련법에 의한 공사업종

업 종 명
1. 환경전문공사업
2.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시공업 등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지금! 신고하세요

국 토 고 통 부 | 1539-0001

국민권익위원회 | 1398 또는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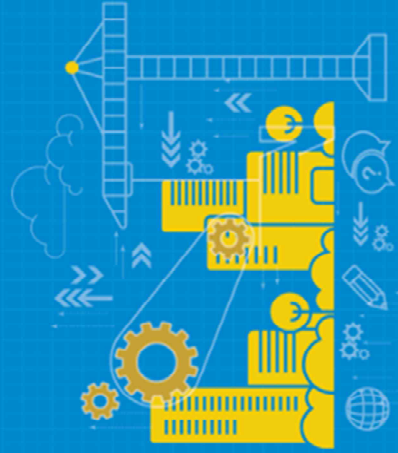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 | 02)3485-8374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건설업 등록증 대여유형 및

불법시공 피해는 이렇습니다



무자격업자

무자격업자 | 1건당 수배민원의 수수료를 주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

-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 등 인·허가 서류상에는
등록된 건설업체 명의로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시공은 무자격업자가 담당
- 시범양곡 적발 사례에서 보면,
건설주주 무자격업자→실제시공자 그리고
임선지(보로케인) 공도를 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유형

1년 이내 유효 후
폐업을 통해 등록 회피

- 무자격업자는 기술자 미배치, 품질·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하자 발생 시 공 후 잠적하여
하자 책임 회피
- 부실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화 공사비용 증가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전가



무자격
건설주주

건설업 등록증
신뢰할 수 없음

-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택·빌라·그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에
무자격업자에 의해 시공되어 더 큰 위험에 노출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공모자 모두 처벌됩니다



부실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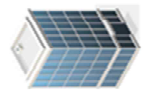
건설업 등록증
대여

임선지

-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시공한 경우 관련자
모두 처벌(건설업기본법 제95조(2) 제2호, 제3호, 제4호)
및 범죄수익 몰수(부패방지법 제41조) 관련 특별법 제43조
-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자, 빌려준 자 및 알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 건축주도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 형법상 처벌
-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통해 얻은 부패재산(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됨

■ 건설업 등록제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건설업기본법 제41조)
-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하고 있으나,
유자격업자(사·호·상 도) 시에도 처벌됨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다만 단독주택 등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연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사업자가 시공하여 함

건설시공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건설사업자에게 맡겨주세요



건설사업자

국가 공인

■ 건설업 등록제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



건설업
등록증

8억5천만원

11인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3억5천만원

5인

사무실

자본금의 25~60% 보증기관 예치

■ 소정의 재산은 충분한 시공능력 신장을
증명 필요

- 건설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
하므로 믿을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
- 학급 시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설기술자의
연장배치 여부 및 건설사업자의 교육
계획서 확인



건설업
등록증
신정